

미등록 이주민 단속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9년 4월 29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1층)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살인단속 규탄 및 미안마 노동자 탄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순서

○ 좌장 : 석원정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시 간		내 용
1 부	14:00 - 14:10	● 인사말
	14:10 - 14:25	●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변화 양상 3 ○ 정영섭(이주공동행동)
	14:25 - 15:25	● 현장 사례를 통해 본 단속 문제 및 진상 규명의 한계 ○ 조돈희(울산이주민센터) 25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 오세용(경주이주노동자센터) 27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41 살인단속규탄 및 미안마노동자 탄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 사월(다산인권센터) 51 단속추방중단!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15:25 - 15:40	● 전체 토론
	15:40 - 15:50	● 쉬는 시간
2 부	15:50 - 16:20	● 미등록 이주민 양산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 문제 ○ 김태정(두레방 쉼터) 59 ○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 노동조합) 67
	16:20 - 17:00	● 단속과 추방을 넘어서는 접근과 대안 73 ○ 이탁건(재단법인 동천) ○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 정동재(한국행정연구원) ○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17:00 - 17:30	● 전체 토론

발제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변화 양상

정영섭(이주공동행동)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이주공동행동 /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 정영섭

1. 서론

故딤저테이 씨와 단속추방으로 죽어간 모든 이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은 역대 정부의 성격이 어떠했든 크게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강화되고 있는 정책이다. 시기별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등락이 있었지만 이를 대체하는 대안은 별로 없는 채로 미등록 체류자 숫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해왔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는 오로지 이주노동자들의 몫이었고 합법과 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양산했다. 수십 명이 단속추방과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부지기수다. 특히 노조를 결성해서 활동한 이주노조 간부들은 ‘표적’이 되어서 늘상 동시다발적으로 폭력 단속을 당하고 추방되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운동 진영은 ‘인간사냥’ 강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체류자를 합법화하라는 요구를 항상 주장해왔다. 그러나 인권을 국정의 주요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그 레토릭이 무색하게 단속추방이 거의 최대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故딤저테이 씨는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죽음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자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위해서 단속추방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 단속추방에 있어 정부의 일차적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의 이주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속으로 미등록 체류자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단속추방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계속 쓰는 이유는 미등록 체류자와 전체 이주민을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즉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형태의 단속추방을 이주민들이 주변에서 경험하면서 공포심을 갖게 되고 언제 어디서든 합법비자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주어진 차별적 법·제도 속에서 순응해야 한다고 내면화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협상력을 박탈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사업주에게 밍보이면 비자를 잃을 수 있으니 아무리 힘들고 열악해도 참으라는 신호를 준다. 단속은 또한 이주노동자의 결속을 파괴한다. 노조 간부를 표적단속하여 노조파괴를 꾀했고, 공동체 리더나 문화활동가까지 단속하여 비판적 목소리 자체를 봉쇄하고 연대를 깨뜨렸다.

사업장이나 주거지에서의 단속은 급습을 통해 위압적 분위기를 만들어 현장의 모든 노동

자를 일단 잡아놓고 한 명 한 명 신분증을 검사해서 비자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니 무고한 사람이 잡히기도 하고 심지어 한국사람이 외모가 이국적이라는 이유로 잡히는 일도 벌어진다. 그렇다고 사과나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법·제도로 이주민을 차별하고, ‘불법’체류자라고 범죄자 취급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 대중들로 하여금 이들이 이런 폭력적 단속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즉 차별과 착취를 통해 사회구조의 맨 밑바닥계층에 이주민을 고정시켜 놓고 이를 지속시키며, 범죄자 취급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억압적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단속추방을 하되 유연하고 비폭력적으로 인권을 지켜가면서 하라거나 하는 것보다는 과 같은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법·제도 전반을 유지시키고 이주민 전체를 통제·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단속추방 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와 중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역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정부가 이를 구사해 왔는지 정리하고 이를 비판할 것이다.

2. 단속추방 정책의 시대적 흐름

1) 미등록 체류자 통계

1992년 이후의 미등록체류자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아래와 같다.

연 도	총체류자	미등록체류자				미등록 체류율
		소계	등록	거 소	단 기	
1992년	171,921	30,889				17.9%
1993년	169,749	54,508				32.1%
1994년	204,991	48,231				23.5%
1995년	269,641	83,103	14883		68220	30.8%
1996년	351,084	129,054	24861		104193	36.8%
1997년	386,972	148,048	32,990		115,058	38.3%
1998년	308,339	99,537	25,301		74,236	32.3%
1999년	381,116	151,986	31,317		120,669	39.9%
2000년	491,324	205,205	42,048		163,157	41.8%
2001년	566,835	272,626	67,064		205,562	48.1%
2002년	629,006	308,165	83,779		224,386	49.0%
2003년	678,687	154,342	72,500		81,842	22.7%
2004년	750,873	209,841	89,857	768	119,216	27.9%
2005년	747,467	204,254	107,049	830	96,373	27.3%
2006년	910,149	211,988	106,657	1,496	103,835	23.3%
2007년	1,066,273	223,464	107,278	1,891	114,295	21.0%
2008년	1,158,866	200,489	93,461	542	106,486	17.3%
2009년	1,168,477	177,955	83,729	613	93,613	15.2%

2010년	1,261,415	168,515	78,545	732	89,238	13.4%
2011년	1,395,077	167,780	82,848	578	84,354	12.0%
2012년	1,445,103	177,854	92,562	1,579	83,713	12.3%
2013년	1,576,034	183,106	95,637	1,533	85,936	11.6%
2014년	1,797,618	208,778	93,924	2,066	112,788	11.6%
2015년	1,899,519	214,168	84,969	1,114	128,085	11.3%
2016년	2,049,441	208,971	75,241	941	132,789	10.2%
2017년	2,180,498	251,041	82,837	1,064	167,140	11.5%
2018년	2,367,607	355,126	90,067	1,015	264,044	15.0%
2019년 3월	2,379,805	356,095	90,278	1,110	264,707	15.0%

(연도별 통계자료를 재구성하였음)

1992년 이전의 자료는 노동자 숫자를 파악한 아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 1987~2005년>1)

연도	전체	합법체류자							미등록 노동자
		소계	취업 사증 소지자			산업연수생			
			전문기술 인력	비전문 취업자	연수 취업자	내향 선원	업종단체 추천	해외투자 기업	
1987	6,409	2,192	2,192	-	-	-	-	-	4,217
1988	7,410	2,403	2,403	-	-	-	-	-	5,007
1989	14,610	2,474	2,474	-	-	-	-	-	12,136
1990	21,235	2,833	2,833	-	-	-	-	-	18,402
1991	45,449	3,572	2,973	-	-	-	-	599	41,877
1992.7	73,368	7,840	3,395	-	-	-	-	4,945	65,528
1992.12	43,664	12,765	3,395	-	-	-	3,932	5,438	30,899
1993	68,500	13,992	3,767	-	-	-	3,759	6,466	54,508
1994	81,824	33,593	5,265	-	-	-	18,816	9,512	48,231
1995	128,906	47,040	8,228	-	-	-	23,574	15,238	81,866
1996	210,494	81,440	13,420	-	-	-	38,296	29,724	129,054
1997	245,399	97,351	15,900	-	-	-	48,795	32,656	148,048
1998	157,689	58,152	11,143	-	-	-	31,073	15,936	99,537
1999	217,384	82,046	12,592	-	-	-	49,437	20,017	135,338
2000	285,506	96,511	17,000	-	2,063	-	58,944	18,504	188,995
2001	329,555	74,349	19,549	-	8,065	-	33,230	13,505	255,206
2002	362,597	73,358	21,506	-	12,191	-	25,626	14,035	289,239
2003.3	369,984	82,928	21,263	-	11,593	-	36,711	13,361	287,056
2003.8	391,424	85,042	21,001	-	11,670	-	40,083	12,288	306,382
2003.9	392,270	94,296	20,960	8,399	12,675	-	40,126	12,136	297,974
2003.10	382,162	163,031	20,952	74,185	15,139	-	40,590	12,165	219,131
2003.11	381,634	237,523	20,528	147,180	17,496	-	40,329	11,990	144,111
2003.12	388,816	250,760	20,089	159,706	20,244	-	38,895	11,826	138,056
2004	420,702	232,219	20,272	126,421	48,937	34	28,125	8,430	188,483
2005.9	337,358	149,450	23,314	36,710	48,284	175	34,409	6,558	187,908

2003년 8월에는 미등록 체류율이 78%에 달한다.

1) 설동훈,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정규모 추정, 2005

법무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대책”(‘18.9.20)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다음과 같다.

(‘18. 8월말 기준, 단위 : 명, %)

구 분	계	태 국	중 국	베트남	몽 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러시아	기 타
체류외국인	2,308,206	188,202	1,059,482	189,710	44,272	56,213	30,525	52,593	687,209
미등록체류자	335,455	122,192	71,436	38,380	15,478	12,863	11,746	11,035	52,325
미등록체류율	14.5	64.9	6.7	20.2	35.0	22.9	38.5	21.0	7.6

체류기간별 미등록 체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통계자료)²⁾

체류기간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4년 이하	4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전체
규모	39,726	37,697	43,256	27,487	29,464	12,932	31,762	28,717	251,041
비율	15.8	15.0	17.2	10.9	11.7	5.2	12.7	11.4	100.0

2)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정책 흐름³⁾

(1) 1992년 이전: 사실상 묵인, 방조

- 1986~87년 이후 들어오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위한 합법적 체류비자는 없었고 주로 단기 방문이나 관광 등의 명목으로 들어와 중소기업 저임금 일자리에 일하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 정책도 없었고 비자도 없었으며 중소기업들이 저임금 인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를 단속하지 않고 묵인, 방조했다.

(2) 1992년~1994년: 자진 신고와 네 차례 출국 유예

- 정부는 1992년 6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사업주 대상으로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12월 말까지 체류를 허용하였다. 정부는 항공기 및 선박 부족으로 일시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신고 업주는 10,796명이고 미등록 노동자는 61,126명이었다. 연말이 다가오자 정부는 제조업 노동자에 한하여 1993년 6월 말까지 다시 출국 기한 연기 조치를 내렸다. 1993년 6월에는 다시 연말까지 출국을 연기하였다. 출국 시 노동력 부족 때문에 1994년 5월 말까지 네 차례 출국을 연기하였다. 5월인 이유는 그 때부터 산업연수생들이 입국하기 때문이었다.

2) 오정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에 대한 해외 법제도 연구, 2017에서 재인용

3) 이하는 설동훈 위의 글, 석원정, 한국의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조치의 흐름과 특징,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다문화사회 편입방안 제안 토론회>자료집, 2009, 법무부 각 연도별 보도자료, 최서리 외, 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4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3) 1995년~2001년: 시기집중 단속, 자진신고 정책 반복

- 그러나 산업연수생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미등록 체류자들에 비해 훨씬 열악했기 때문에 연수생들은 이후 대거 사업장을 이탈해서 미등록이 된다. 그래서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예컨대 1996년 6월 집중단속을 하면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출국조치를 내리고 이들을 고용한 업주 등은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히 적용,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같은 해 10월 1일부터는 합동단속을 하며 “10.1부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직원은 물론 경찰청, 노동부 등 관계기관 인력을 총 동원하여 그 동안 자제하여 왔던 제조업체를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하여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다시는 외국인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염불이 되었다.

- 1997년 7월 1일부터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불법고용주에 대하여 현행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집중단속은 해마다 진행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산업연수생 신규 도입 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 수도 늘어났다. 정부는 12월 27일부터 1998년 4월 말까지 자진출국과 범칙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였고 연말 기준 148,048명의 미등록 노동자 가운데 36.1%인 53,389명이 출국하였다.

- 1999년에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및 구소련동포가 적용에서 제외되어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는 보완대책을 내놓았고 그 가운데 미등록 체류자 대책으로 “재외동포법 시행 후 대대적인 특별자진출국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규제를 완화하며 자진신고 한 고용주는 처벌을 면제하기로 하였음. 다만 1992년부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기간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된 결과 기대심리로 자진출국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특별자진출국신고기간 이후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여 <준법관용 위법엄벌> 원칙을 세워나갈 것임.”이라고 하였다. 결국 자진출국, 집중단속이 별 다른 기준 없이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999년 5월 7일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새로 만들어졌다. 1992년 8월 31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구 국립농업자제검사소 건물을 보호소로 활용하다가 시설이 좁고 수용인원도 150명밖에 되지 않아 1997년 12월부터 화성에 공사를 시작하여 400여 명 수용시설로 지은 것이다.

(4) 2002년: 월드컵/부산아시안게임 앞두고 자진신고와 출국 유예

- 2002년 3월 12일에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5월 25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설정하여 신고하는 미등록자와 고용주 처벌 면제하고 2003년 3월 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 둘째,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한 입국규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셋째, 불법체류 다

발국가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 넷째, 단속반 인원 증원 등이었다. 다시금 1년 이하의 출국 유예 정책 혹은 한시적 합법화 정책을 쓴 것이다. 이 시기에 총 25만6천 명이 신고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이에 대한 거부투쟁을 평등노조이주지부 등에서 전개하였고 2002년 4월 7일에 1천 명의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 일제등록 거부와 합법화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등 반대 투쟁도 전개되었다.⁴⁾ 자진신고가 단계적인 추방정책임을 비판했고 미등록 노동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와 노동의 자격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5) 2003년: 고용허가제 실시 전 출국유예, 부분 합법화, 대대적 단속추방 시작

- 2003년이 되자 정부는 “1월 13일에서 2월 22일까지를 ‘출국유예기한 연장신청기간’으로 설정하여, 자진신고 외국인 중 체류기간 3년 미만자에 대하여 2004년 3월말 한도로 입국일로부터 총 체류기간 3년까지 출국준비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체류기간 3년 이상자는 3월 말까지 출국대상이었다. 늘 엄정한 법집행과 강력한 단속을 부르짖던 정부가 기업의 인력공백을 이유로 다시금 출국유예를 하였으며, 이번에는 3년을 기준을 미등록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한 것이다.

- 2003년 3월에 정부는 다시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금년 3월말까지 출국유예하였던 불법체류외국인 255,978명중 이미 출국한 17,368명과 3년 미만 불법체류자로 금년 1월 13일에서 2월 22일까지 재 유예조치를 받은 81,693명을 제외한 나머지 156,917명에 대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금년 8월말까지 최장 5개월간 한시적으로 출국기한을 일괄 재 유예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고용허가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인력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2003년 8월에 고용허가제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3월 말 기준 체류기간 3년 미만자(162,690명)에 대해서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최장 2년간 취업을 허용하고, 체류기간 3~4년인 자(65,067명)에 대해서는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되 5년 한도에서 남은 기간 동안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를 허용하며, 4년 이상인 자와 미신고자, 신규 미등록자 12만여 명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 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추방대상인 12만여 명은 자진출국이든 추방이든 한국에서 다시 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버티면서 출국을 택하지 않았다(23,441명만 출국). 정부는 10만여 명을 단속추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3~4년 체류자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1년 남짓 일을 하는 것이므로 신고율이 저조했다. 11월 30일까지 총 신고대상 227,757명의 80%인 184,199명이 신고했다. 정부 목표는 90%였다고 한다. 신고 결과 2003년 말 미등록 체류율은 22.7%로 일시 하락했다.

- 2003년 11월 17일 이후 정부는 법무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50개 단속전담반을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초강력 단속을 시행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자 전국 곳곳에서 미등록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일

4)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노조조직화 사례연구, 2014 참고

할 수 없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항의농성이 명동성당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벌어졌다. 단속추방의 공포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비극까지 초래되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인력난을 이유로 제조업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나서는 일반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단기적 부분 합법화마져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미등록체류 동포를 대상으로 2005년, 2006년, 2010-11년 등 4차례 부분적 사면 정책을 실시하였다. 2011년 10년 이상 장기체류 동포에 대한 구제를 할 당시, 외노협과 이주공동행동 등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동포 노동자를 차별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가인권위는 비동포 이주민도 차별없이 구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2006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신고한 초등학교 재학 미등록체류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해 최장 2008년 2월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아동 97명, 부모 116명이 체류허가를 받았다.

(6) 2004년 이후: 합동단속, 자진출국 유도, 표적단속

- 정부는 2004년 1월 26일부터 합동단속을 하고, 15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는 이에 대하여 입국규제기간을 최장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제조업체에 대한 본격적 단속은 ‘인력공동화 논란’과 보호시설부족 등 단속여건을 감안하여 무차별적인 단속은 지양한다고 하였다. 그러다 자진출국 기간을 2월 말까지로 다시 연장하고 3월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을 계기로 매월 1회 10일간 경찰과 합동으로 자체 단속,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인 수도권 5개 지역을 특별집중단속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국, 검찰, 경찰 합동으로 불법고용주 및 불법 브로커 위주로 단속 실시(6-7월), 불법취업·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TV, 신문 등 언론홍보 및 가두 캠페인 실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7~8월 중) 등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미등록 체류자가 다시금 증가하여 6월말 16만6천명에 이르자 법무부장관이 강력 대처 담화문까지 발표하게 된다. 7월에는 ‘불법체류외국인 대책협의회’를 7개 부처가 모여 진행하고 미등록 체류자가 10만 명 이하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 2005년에 2월에 정부는 대책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관계기관 합동단속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03년에 양성화된 노동자의 기한 내 자진출국 유도, 전국에 26개 단속반 운영 등을 발표하였다. 3월 7일에는 ‘법무부·노동부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강력 추진’을 공동 발표하였다. “03년도 합법화된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의 출국기피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를 해소하고 체류외국인의 범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2005년을 ‘불법체류자 감소원년의 해’로 정하고 단속 및 자진출국을 유도하여 7월말 작년 동기 대비 5배에 달하는 10만6천여 명의 미등록 체류자를 출국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

했다. 단속의 칼바람 속에 역대 최대 숫자인 4만5천여 명이 2005년에 잡혀갔다.

단속이 강화되자 마석공단에서는 고용주들이 나서서 단속차량을 막아서는 일도 발생했다. 10월 17일 마석지역 단속으로 30명을 체포해 가려던 서울출입국 차량을 고용주 등이 막아 나섰고 이날 오후 5시 경에는 주민들과 단체까지 가세하여 300여 명이 차량을 막고 천막을 치는 등 대치하는 일이 있었다.

- 2007년에는 동포노동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실시하면서 미등록체류 동포들이 방문취업제로 구제되었다. 방문동거(F-1-4) 자격이나 특례(E-9)로 미등록체류 중인 동포 중 입국 3년 미만인 경우 방문취업제의 대상에 포함해 구제한다고 3월에 정부가 발표했다.

- 그리고 2003년 농성투쟁 이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주노동자 활동가, 간부들에 대한 표적단속이 줄을 이었다. 2004년 초에 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를 비롯한 여러 조합원들, 2005년 이주노조 설립 직후 초대위원장 아느와르 후세인, 2007년 11월 까지만 까봉위원장, 라주 구릉 부위원장, 모니루자만 마숨 사무국장, 2008년 5월 토르너 림부 위원장, 압두스 소부르 부위원장 등에 대해 출입국은 감시와 잠복, 덮치기식 폭력으로 표적단속을 하였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리더들도 단속되었고 2009년에는 문화활동가인 스타크랙다운밴드의 미노드 목탄(미누)까지 표적단속 되기에 이르렀다. 2007년 2월 11일에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해서 미등록 체류자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비극이 발생했다. ‘보호’라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과 구금이 초래한 야만적 사건이었다.

(7) 이명박 정부 시기: 극대화된 야만, 토끼몰이식 단속

- 2008년 3월 14일 노동부 업무보고 시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합법적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며 돌아다니게 해선 안된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이후 강경한 단속추방이 실시되어 5월~7월 합동단속을 시행했고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을 표적단속 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긴급구제 결정을 하고 조사하는 과정이어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것을 권고하고 ILO에서도 긴급 개입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5월 2일 단속해서 15일에 강제추방하는 작태를 보였다.

- 2008년 4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70일간에는 정부가 여권 위·변조 등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총 8천35명(외국인 3천4백명)을 검거하였다. 억울하게 잡혀간 이들이 많았다.

- 2008년 9월에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 7차 회의에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채택하였는데, 향후 5년 이내에 미등록 체류자 수를 총 체류자의 10% 이하로 감소(당시 19.3%)시키고 (국가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능한 불체율은 10%선 이하라고 명시함) 연말까지 20만 명 선으로 감소시키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 감소 5개년 계획’을 구성하고, 단속반 인원을 늘리고 연2회 정부 합동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밀집지

역과 ‘불법시위 및 노조 가담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즉 인위적으로 총동원하여 국가가 단속추방을 극대화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법무부와 노동부를 동원하여 10월13일~11월12일(1개월)간 연인원 3천4백 명을 투입하여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철역, 버스터미널, 공장밀집지역 등에서 진행하였다.

-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단속을 극대화한 것의 결정판은 마석공단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이었다. 11월 12일 법무부와 경찰 280명이 동원된 싹쓸이 단속에서 마석공단과 연천 청산농장에서 한꺼번에 130여명을 폭력적으로 단속한 것이다. 단속 법무부·경찰 합동작전까지 벌인 것은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군사작전과도 같이 경찰버스가 진입로를 막고 경찰이 공단 골목마다 지키며 검은 제복의 단속반원들이 10여 명씩 팀을 이뤄 공장과 집을 이 잡듯이 수색했다. 눈에 띄는 이주노동자는 무조건 잡아들였다. 단속과정에서 10여 명이 중경상을 당했고 술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결집하여 정부에 거세게 항의를 하고 마석지역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미등록 체류자 숫자 감소 목표치를 설정하고 무리한 단속을 밀어붙이는 이와 같은 참사를 초래할 뿐이었다.

- 2009년에는 외국인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와 외국인 체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현재 18만 명 가까운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단속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되, 자진출국을 장려하기 위해서 5월 6일부터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와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입국규제를 유예하거나 또는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10월 말까지 시행”하였다. 또한 체류 외국인 등 집단 거주지역 동향조사 강화, 특별조사팀과 이민특수조사대(9.1. 설치)를 가동하여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범외국인 관리 강화, 미등록 체류 단속 강화 등 미등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억압적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G20을 빌미로 한 이주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며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이 30일 간 단식농성 투쟁을 전개하였다.

- 그 와중에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이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 2010년 이후 고용허가 노동기간이 만료된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대략 30%)가 귀국하지 않고 초과체류 하게 되었다. 예컨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의 기간 동안 체류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 가운데 39.8%가 출국하지 않았다.⁵⁾ 그러자 2011년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을 제정하여 미등록 체류자 고용 사업장 제재를 강화하였다. 지금까지는 적발되더라도 시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적발시 1차로 미등록체류자 고용을 중단시키되,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고

5) 이상림·정영탁, 불법체류자 현황분석 및 관리정책 연구: 불법화 경향 통계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2011

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료 후 귀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CBT를 볼 수 있게 하고, 2012년에는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까지 만들어 기간 만료 후 출국을 유도하는 조치를 내놓았다(세 번 입국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2018년에 정부는 법개정을 하여 단순노무인력은 9년8개월을 상한으로 정해버렸다). 2012년부터 발생한 방문취업제 만료자들에 대해서는, 자진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 후에(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다시 4년 10개월 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하는 것을 보장했다.

- 2012년 1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장기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문과 얼굴정보 확인 전면 시행하였고, 매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였다.

- 2011년 11월 경주 외동공단 S업체에 대해 대구출입국과 노동부의 합동단속 과정에서 8명을 단속해 나가는 승합차를 노조지회장과 노조원 40여 명이 출입문을 막아 저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간부 2명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등 4명이 체포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단속강화에 계속적인 저항이 있었다.

(8) 박근혜정부 시기: 광역단속, 상시단속체제, 브로커수사 강화

- 정부는 법을 개악하여 2014년부터 퇴직금(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규정하였다. 보험금 수령 후 미등록 체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임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미등록 체류를 줄이는 효과도 별로 없었다.

- 2015년 2월 정부는 합동단속을 지역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인력 쿼터 결정 시 자진출국률을 포함시켜 해당 국가의 자국민 귀국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6년 3월에는 4월부터 9월까지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는 미등록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다(이후 3개월 더 연장함). 또한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는 한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2016년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3년 이내에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고 하였다.(’15년도 11.3%→’16년도 10.7%→’17년도 10.0%→’18년도 9.3%) 세부적으로는,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약 23%로 높은 점을 고려, 도입규모 결정에 불체율을 반영,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 등이었다. 목표설정이 무색하게 미등록 체류율은 증가해서 현재 15%를 넘어서고 있다.

- 2016년 12월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성실·특별 재입국 만료자 중점 관리(체류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방문·전화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고용제한조치 강화(고용사업주 고용제한 확대), 단속철저 등이다.

(9) 문재인정부 시기: 특별단속지역, 광역단속·상시단속 확대, 브로커 집중단속

- 2017년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10.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하였다.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 하는 경우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했다.(기존에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면제(불법체류 1년 미만), 입국금지 1년(불법체류 1년 이상~3년 미만), 입국금지 2년(불법체류 3년 이상))

- 2017년부터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 24개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 공단 5, 건설현장 5, 인력시장 3개소라고 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 영남권 6, 중부권 5, 기타 6개 지역) 2018년에는 34개소로 확대, 분야별로는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하였다.

- 2017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1주간에 정부합동단속을 시행하여 외국인 13,255명과 고용주 2,549명을 적발하였다(전체적으로는 미등록 31,237명과 고용주 6,657명을 적발)(15년 19,925명, '16년 29,814명). 2017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을 수립하였는데, 합동 단속 기간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을 340명(법무부 179, 고용부 50, 경찰청 80, 해경청 30)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총 취업 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노동자('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 전수 관리 추진 등의 내용이다.

- 2018년에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외에 수도권북부(수도권 남·북 분리)·경북권 신설)하겠다고 하였다. 9월에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하였다. 건설업, 유흥·마사지업 등에 대한 집중 단속, 특별 자진출국 기간('18.10월~'19.3월, 총 6개월) 운영 등의 내용이었다.(2월 말까지 5개월 간 3만4천명 출국) 2019년에 들어서는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2개월 간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3월 한 달 동안 법무부-경찰청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4월부터는 5개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가 참여한다고 한다. 사증면제나 단기사증으로 들어오는 이들의 숫자가 급증하자 유흥·마사지업, 건설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최근 몇 년간 단기체류 미등록자가 늘어나자 법무부장관이 태국노동부장관과 2018년 9월에 양자회담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 태국노동부장관은 12만에 달하는 미등록 노동자의 일시 체류 허용을 한국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인력쿼터가 적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다고 한다.⁶⁾

6) 연합뉴스, "태국, 한국에 불법 이주노동자 일시 체류허용 요청키로", 2018.10.4일자

3.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으로 본 단속추방 정책

1)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08-2012)

-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1차 기본계획에서는 “2003년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한 합법화 조치로 불법체류자가 일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 증가”, “불법체류자 단속은 불법체류자의 직접 감소효과 외에 잠재적 불법 체류자의 입국방지, 자진출국 유도 효과 등을 갖는 중요한 불법체류 대책인데 단속 인프라는 미흡” 등의 진단을 하고서, 대책으로 △비자발급 단계의 불법체류 사전 예방대책 강화(출입국정보시스템과 영사민원시스템 연계 확대, 불법체류 다발국가와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추진)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조사역량 강화(기획조사 강화, 단속인력 확충, 이민수사대 신설 검토, 합동단속 정례화, 불법체류대책 5개년계획 수립) 등을 내놓았다. 또한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도 표방하였다. 2000년대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본격화된 단속추방 정책을 집약하였는데 이 틀이 현재까지 크게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2)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3-2017)

- 박근혜정부 시기 2차 기본계획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라는 큰제목 하에 △불법체류자 단속역량 강화(광역단속 및 기동단속팀 가동, 사업장 출입조사권 법제화) △불법고용 근절 기반조성(고용주 제재 강화, 불법직업소개 근절, 신속한 신고대응체계, 불법체류자 통계를 인력쿼터에 연계)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브로커 기획조사 강화, 단속직원 수사역량 강화) 등을 내놓고 있다.

3)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8-2022)

- 문재인정부 들어서 수립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항목 하에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소항목의 세부 과제로 △불법체류 외국인 대응체계 개선(신속출동팀 운영,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권역별 광역단속팀 운영) △불법체류 조장사범 엄단(알선브로커 엄단) △단속 및 조사 전문성 강화 △디지털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사회통합프로그램 법질서교육 강화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및 사이버팀 신설 등을 서술하고 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미등록 체류자 단속추방 기조와 과제는 크게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자 숫자의 증가에 따라 단속인원과 장비 확대, 광역단속팀이나 기동단속팀 확대, 특별 단속지역 지정, 브로커 기획조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그 중에서 미등록 체류자는 사람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보아 통제와 배제로 일관하는 정책이다.

4. 단속추방 인원 추이

법무부에서 통계로 작성하는 소위 ‘출입국사범’ 처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총계	강제 퇴거	출국 명령	출국 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건	금액(천)		건	금액(천)	
'00년	30,555	6,890	827	1,696	9,246	5,318,800		3,196	449,700	8,204
'01년	40,527	10,301	1,280	2,097	13,121	7,871,425	531	3,364	590,650	9,833
'02년	30,452	5,670	613	1,808	11,297	5,894,790	351	3,955	524,220	6,758
'03년	42,906	5,861	2,446	1,386	8,427	4,235,695	535	5,398	648,985	18,853
'04년	67,734	19,307	1,511	2,259	20,444	22,747,620	780	7,245	1,354,830	16,188
'05년	105,212	38,019	2,523	3,152	19,123	31,985,462	1,595	8,327	1,498,020	32,473
'06년	69,674	18,574	901	2,509	22,468	20,173,221	1,438	6,231	957,645	17,553
'07년	72,712	18,462	948	2,458	26,212	28,724,790	1,437	6,959	1,002,700	16,236
'08년	105,941	30,576	1,240	3,689	26,325	34,486,326	2,186	11,200	1,421,543	30,725
'09년	100,337	29,043	1,180	2,401	23,851	31,989,135	2,470	11,434	1,546,146	29,958
'10년	94,232	13,474	1,472	2,781	33,109	43,505,440	1,171	11,987	1,700,448	30,238
'11년	92,970	18,034	2,250	2,862	31,417	44,874,390	928	10,435	1,520,690	27,044
'12년	96,799	18,248	3,340	2,676	24,279	30,740,620	819	13,796	1,955,220	33,641
'13년	101,760	18,268	5,655	3,775	25,148	31,614,430	1,234	10,189	1,391,510	37,491
'14년	102,319	16,676	3,416	3,114	27,800	28,764,910	1,222	10,162	1,400,806	39,659
'15년	124,515	21,919	5,564	3,192	29,272	35,037,850	1,850	8,558	1,312,070	54,160
'16년	152,486	28,784	6,183	3,345	29,380	38,592,080	2,553	7,271	988,440	74,970
'17년	146,924	26,694	6,282	3,366	29,838	40,094,280	2,851	15,205	2,165,600	62,688

(기타: 처분면제 등)

위 표를 보면, 2000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강제퇴거 된 사람 전체 숫자는 344,800명으로 어마어마하다. 한 해 평균 2만여 명이 추방되고 있다. 그런데 단속된 사람은 강제퇴거 된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단속된 사람 가운데 추방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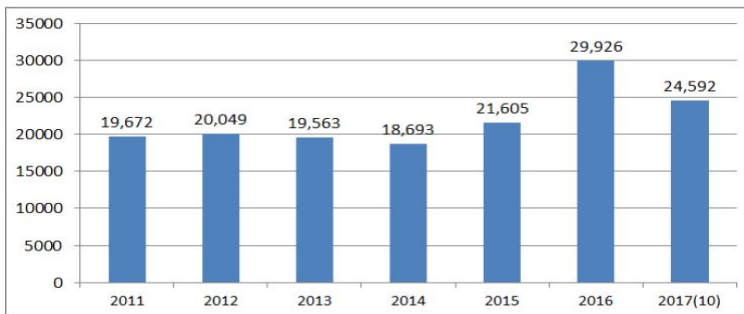
자료에 따르면 매해 단속 인원은 다음과 같다.⁷⁾

7) 법무부 각 연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감 및 석원정, 위의 글 참조하여 재구성

연도	미등록체류자	단속인원
2004	209,841	22,826
2005	204,254	45,052
2006	211,988	23,771
2007	223,464	22,546
2008	200,489	32,591
2009	177,955	30,229
2010	168,515	22,139
2011	167,780	18,743
2012	177,854	19,032
2013	183,106	18,763
2014	208,778	18,443
2015	214,168	19,925
2016	208,971	29,814
2017	251,041	31,237
계		355,111

2004년에서 2017년 사이 전체 단속 인원은 355,111명이고 한 해 평균 대략 2만5천 명이다. 가장 많은 단속이 자행된 해는 2005년인데, 2003년 실시한 한시적 합법화 기간이 끝나는 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단속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4만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때려잡은 것이다. 그 후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과 2009년에 3만 명 이상을 단속하였고 미등록체류자 비율이 감소하면서 단속 인원도 줄었는데 비율이 늘어난 2017년부터 다시금 3만 명을 넘게 단속했다. 2018년에는 훨씬 더 많이 단속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해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이들의 숫자도 늘어난다.

<연도별 구금 이주민 숫자(2011-2017)⁸⁾>



(2017년은 10월 통계)

8) 오정은, 위의 글 참조

5. 단속추방 정책의 문제점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정부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첫째, 한국정부는 미등록 체류자 문제에 있어 강제 단속추방이 항상 중심적인 정책이었다. 초기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묵인과 방조에 이어 반복적인 출국 유예, 체류 기간에 따른 한시적 합법화 등에 있어서도 단속추방을 깔고 진행했고 이어서 대규모 단속이 잇따랐다. 입국규제 면제를 조건으로 한 자진출국 정책을 쓸 때도 강력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그 공포분위기의 영향으로 출국자를 늘리려 했다.

둘째,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표적단속’을 해서 이주민들이 스스로 결속하여 역량을 축적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자 했다. 이주노조에 대해서는 ‘불법외국인노조’라며 뿌리를 뽑고자 조합원, 간부에 대한 연속적인 표적단속을 자행했다. UN과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술한 비판과 권고를 받았다.

셋째, 단속추방 자체가 폭력적 과정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200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속과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이들은 삼십 여 명이 넘는다. 목표치나 할당량을 설정하여 이를 채우려 하는 것, 사업장이나 주거지, 식당 등을 급습하는 방식 등은 변함이 없다. 정부 스스로 정한 인권준칙도 무용지물이다. 긴급보호명령서만 남발한다.

<단속이나 구금 과정에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이주노동자들>9)

2003	11월 1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앞두고故다리카씨(스리랑카) 지하철투신자살
	11월 12일 故비꾸씨 (방글라데시) 단속 두려움에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11월 17일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동단속시작
	11월 20일 故안드레이씨(러시아) 바다에 투신 자살
	11월 25일 故부르흐씨(우즈베키스탄) 공장에서 목을 매 자살
	12월 9일 故방글라데시 노동자 자카리아씨 단속 피해 혼자 지내다 심장마비 사망
	12월 9일 故 중국동포노동자 김원섭 씨 혜화동 로터리 부근에서 동사
2004	4월 방글라데시 故카이살 후세인 강제단속, 장시간근무, 임금체불로 급성심근경색 사망
	11월 부천에서 나이지리아출신 이주노동자가 출입국단속반이 쓴 마취 총에 맞아 기절한 채 연행
2005	10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4층에서 중국 여성노동자 떨어져 사망
2006	2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터키노동자 故코스쿰 셸림 떨어져 사망
	4월 부천에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던 인도네시아 노동자 故누르 푸아트씨 추락사
	5월 중국동포 장풍 씨 창원의 한 공장에서 단속 피하려다 2층에서 떨어져 뇌사
2007	1월 전남 해남에서 중국노동자 故여풍산 씨(32),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심장마비 사망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명의 이주노동자 사망
	11월 발안의 외국인교회에 출입국단속반 난입하여 이주노동자 2명 중상입음

9)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 폐기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촉구를 위한 동시다발행동 기자회견 자료, 2018.6.15. 보완

2008	1월 중국인노동자 故권봉옥씨가 단속과정 중 8층 높이에서 추락사 4월 남양주 단속과정 중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 8월 부산에서 중국 노동자 작홍근씨 단속중 추락하여 중상 11월 마석 성생기구공단과 연천 청산농장 출입국 경찰 합동단속으로 13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연행당함. 공장 무단침입, 주택 문 부소고 침입, 여성 머리채잡고 끌고 가기, 폭행 등 인권 침해. 이주노동자 10여명 중경상 입음.
2010	10월 서울 가산동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故꾸안 씨가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추락사
2011	11월 김포시에서 단속과정 중 중국인 노동자 H씨 심장마비로 사망
2012	3월 동해시에서 단속과정 중 중국인 노동자 허씨 단속을 피해 바다에 뛰어들어 사망 11월 부산 기장군에서 단속과정 중 옹벽에서 추락한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후 사망
2015	3월 서울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필리핀 이주여성과 2살난 아기를 함께 단속함
2016	화성외국인보호소내 단식과 자살기도까지 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의없는 강제추방
2017	7월 4일 울산출입국 이집트 이주노동자 강제단속과정에서 6m아래 펜스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피해 이주노동자 치료과정에서 강제이송이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센터 활동가에게 울산출입국 직원이 폭력을 행사함
2018	4월 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북 영천시 소재공장에서 또다시 야만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임.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이주노동자 25명이 강제 단속을 당했고, 그 중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는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음. 8월 22일 김포 건설현장 단속과정에서 미안바노동자 故판저테이 씨 추락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장기기증하고 사망

넷째, 정치적 고려로 이랬다 저랬다 하며 자의적으로 정책을 집행했다. 이는 미등록 체류자를 일거에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와 고용주가 알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그래서 업계의 요구가 강할 때는 단속을 느슨하게 하여 부족한 저임금 인력을 묵인하고 여론이나 경제상황이 나쁠 때 단속을 더 윤택했다. 몇 명 이하로 감축 혹은 몇 퍼센트로 유지 등의 목표치 역시 자의적이다.

다섯째, 미등록 체류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미등록 체류자는 전체 이주민 대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유지되었다. 합법 외국인력 증가가 내국인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회피하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정부가 챙긴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합법 외국인력 증가는 억제하고 부족한 인원을 미등록 체류자로 채웠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다시 말해, 저임금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미등록 체류자를 늘 필요로 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도 건설업, 농축산어업 등은 이들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겉다르고 속다른 정책이다.

여섯째,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체류를 양산했다. 연수생제도 하에서 많을 때는 8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이탈해서 미등록 체류자가 되었다. 아무런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착취와 인권유린만 당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갖은 문제점으로 인해 미등록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사후적인 단속에만 골몰하고 있다.

일곱째, 강제 단속추방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등록 체류자에게 ‘불법’ 딱지를 붙여 일상적으로 범죄자화 했다. 특히 일부 범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언론은 미등록 체류자 전체를 범죄자집단으로 몰아 아무런 권리가 없어도 되는 것 마냥 취급했다. 심지어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등록 체류자는 범죄자이자 일자리 도둑으로 내몰렸고 오히려 범죄를 당하는 것에 취약해졌다. 작년에 국가인권위가 용어를 바꾸라고 권고했으나 묵묵부답이다.

6. 맺음말

‘No One is Illegal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 운동진영의 공통된 구호이다. 체류와 노동에 필요한 비자나 서류가 없는 미등록 혹은 서류미비자, 비정규적 이주민은 그 존재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미등록 이주민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단속추방을 무기로 폭력을 휘두르는 국가 정책이 불법적이고 부정의하다.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추방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더 이상 야만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단속추방이 부족해서 미등록 이주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 정책을 비롯한 다른 대안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장 사례를 통해 본 단속 문제 및 진상 규명의 한계

조돈희(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오세용(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사월(다산인권센터)

단속추방중단!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부산출입구관리사무소 단속도중 부상자발생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 울산이주민센터 | 조돈희

성 명: LIEU / 국 적: 베트남

- 일시 : 2019년 2월 25일 오후 2시 20분 경
- 장소 : 김해시 한림면 소재 제조업체(선박기자재)
- 단속된 인원 : 총 3명
부상자 1명 발생. 경상대학병원 응급실 입원(최초 조은금강병원-MRI, CT, 소견서 참조)

1. 사건개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김해 소재의 제조업체 단속 중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 단속반 단속팀장 외 14명(추정) 차량 3대(소형버스 1대, 승합차 2대) 사전에 주거권자의 단속 협조 ·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았음. 사전 안전예방계획 수립이 없었음. 위험한 작업장에서 부상자 발생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실시하다가 부상자 발생. 사업장은 선박기자재 부품조립공장으로 매우 위험함. 작업자에서 넘어지게 되면 중상 발생함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장.

2019년 2월 25일 오후 2시 20분경 사업장으로 단속반 난입. 철재구조물 작업장이라 사고 발생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로 추정되는 작업장 인부들의 도주가 시작되고 이를 따라 뒤쫓아가다가 베트남 이주노동자 리우씨를 불상의 단속반원이 뒤에서 붙잡으려고 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 이주노동자의 얼굴이 바닥(바레트를 쌓아둔 곳)에 닿으면서 구도와 발작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황 발생.

작업장 내 현장직원들이 작업장 내부가 뛰기에는 위험하고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리고 단속 중지요청. 단속반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행위를 중지하지 않았다고 함

사전에 사업장 여직원에게 단속 사실을 고지하고 협조를 부탁했다고 단속팀장은 주장하나, 사측에서는 사무실로 들어온 사람이 책임자를 찾았고 신분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니 법무부에서 나왔다면 책임자를 찾아달라고 이야기만 했다고 함. 정확한 신원, 직책이나 성명

고지는 없었다고 함.(조은금강병원 응급실에서 사업주와 출입국 단속 팀장 대질시에도 사전에 협조나 동의절차가 없었다고 진술. 출입국 단속팀장은 사업주에게는 직접 하지 못했고, 사무실 직원에게 알렸다고 진술/사무실 여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사전협조나 고지는 없었고 책임자만 찾았다고 함)

2. 진행경과

- 19.2.25 14시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김해시 소재 사업장 단속 실시, 단속 도중 부상자 발생
- 12.25 119 구급차량으로 김해조은금강병원 응급실 이송(각종 검사실시) 발작이 발생하였기 하나 특이소견이 없어서 이후 대학병원으로 전원
김해조은금강병원 진료의뢰서: (경련성) 발작(진료의뢰서 참고)
- 18시 창원경상대학교병원으로 환자 이송.
- 2.26 13시 뇌파검사까지 완료하였으나 특이소견 없고 일시적인 뇌징탕, 발작증세라 추후에 경과를 보는 것으로 퇴원과 동시에 부산출입국으로 신병 인계됨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참고)
- 2.28 14:10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신경과 외래진료

3. 문제점

- 주거권자에 대한 단속 협조 및 사전 동의 절차 없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 하지 않았음
- 사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없었음
- 사고 발생이후에도 단속반원들이 부상자에 대한 조롱 등 인권의식이 전혀 없는 등. 단속 위주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의 반인권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줌.

2년간 무려 5건의 부상 초래한 출입국 단속!!

_2016년~2018년 경주/영천지역 단속현황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 경주이주노동자센터 | 오세용

I. 2016. 3월 단속

1. 부상 이주노동자 현황

- ① 이 름 : A씨 <<GAO ***** (고**, 高**)>>
- ② 국 적 : 중국
- ③ 생년월일 : 1994. **. **. (여, 2016년 단속당시 만22세)
- ④ 입국시기 : 2014. 08월
- ⑤ 체 류 : D-4-1(일반연수) → 미등록

2. 단속현황

- ① 단속일시 : 2016. 03. 02.(수) 15:20경
- ② 단속장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자동차부품공장 (원청→사내하청→용역업체 소속)
- ③ 단속담당 : 부산출입국 주관 영남권 광역단속팀
- ④ 단속상황
 - 공장 입구 경비실에 출입국임을 통보하고 바로 현장으로 진입. 연락 받은 원청업체 관리자가 2층 작업장으로 뛰어 들어오며 ‘피해라’고 외침.
 - 이에 피해자는 2층현장 반대편 출입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 내려왔고, 밖으로 나가면 잡힐 것 같아 1층 콤프레셔실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잡고 숨음.(여성 이주노동자 3명이 같이 숨음) 잠시후 뒤쫓아온 단속반원이 문을 흔들며 ‘문열어’라고 소리침. 잡힐 것 같아 3명 모두 콤프레셔실 창문을 넘어, 창문밖에 설치된 철제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내려와 창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다리 밑의 공간에 숨음.

- 컴프레서실로 들어온 남성 단속반원 3~4명중 1명이 창문을 넘어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목을 잡음. 손목을 뿌리치고 45도 경사가 나 있는 아래공장쪽으로 도망쳤는데, 경사로가 끝나자 3~4m 정도의 옹벽이 있었지만 그대로 뛰어내림.
- 발목에 우직하는 느낌과 통증이 있었으나 잡히면 안된다는 생각에 발목 질퓌이며 아래공장쪽으로 들어가 제품 쌓아놓은 곳에 숨음. 30여분후 밖으로 나오니 아무도 없어 시내로 와서 용역 사장에게 연락. 용역 사장이 알려주는 병원에 가서 수술~입원. 피해자는 단속되지 않음.
- 당일 중국+태국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10여명 단속됨.

⑤ 부상현황 : 종골의 골절. 폐쇄성

(2016. 03. 02.~04. 25.까지 입원 55일 → 이후 4~5개월 물리치료)

3. 단속대응 및 출입국의 태도

① 단속에 대한 대응

- 2016. 04. 07. 대구출입국앞 기자회견 및 출입국 소장 항의방문
- 2016. 04. 18.~05. 13. 대구출입국앞 1인시위
- 2016. 04. 28. 부산출입국앞 기자회견 및 출입국 소장 항의방문
- 요구사항 : (1) 단속추방 중단
(2) 피해자 산재에 준해 지원(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장)
(3) 폭력단속자 징계

② 출입국 태도 : 부산출입국 유감 표명후 출입국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 약속
(병원비 약 390만원 2016. 06. 03. 지급됨. 병원에서 병원비 감면해 줌)

4. 단속의 문제점

- ①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 : 경비실에 출입국이라 통보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진입 단속 시작
- ② 집요한 추적 단속 : 현장 → 컴프레서실 → 창문까지 넘어오는 등 집요한 추적 단속
- ③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 보호명령서·긴급보호서 없고, 신분증 제시 요구·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단속
- ④ 안전대책 없는 단속 : 3~4m 높이 옹벽 등 위험요소 있었으나 어떠한 안전대책 없이 단속
- ⑤ 부상자 방치 : 옹벽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피해자 그대로 방치. (단속하지 않음)
- ⑥ 책임지지 않는 단속 : 발목뼈가 부러지는 중상 발생에도 그 어떠한 처벌·징계 없었음

⑦ 남성 단속반 중심의 단속 : 여성 중심 사업장이었음에도 여성 단속반원 거의없이 단속

5. 이후 상황

- 초기에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산재신청 필요성 제기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나(남자 친구가 F-4 비자), 병원비 지급되자 연락 두절
- 이후 4~5개월만에 찾아와 산재 진행할 것 요구. 거부하고 종결. (이후 노무사 통해 연락은 적 있음)

II. 2017. 3월 단속

1. 부상 이주노동자 현황

- ① 이 름 : B씨 <<A. Z. E. A. G***** (고*)>>
- ② 국 적 : 이집트
- ③ 생년월일 : 1993. **. **. (남, 2017년 단속당시 만24세)
- ④ 입국시기 : 2015. 10월
- ⑤ 체 류 : G-1(난민신청) → 미등록

2. 단속현황

- ① 단속일시 : 2017. 03. 06.(월) 15:20경
- ② 단속장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자동차부품 포장공장 (원청→용역업체 소속)
- ③ 단속담당 : 울산출입국 주관 영남권 광역단속팀
- ④ 단속상황
 - 회사 정문옆에 있는 사무실에 출입국직원 올라와 여직원(경리)에게 서류 던져주며 출입국임을 통보. 이미 단속차량 2대(그레이스 추정)는 공장안으로 들어와 단속 시작함.
 - 검은 옷을 입은 단속반 7~8명이 현장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 '도망가' 라고 소리침. 피해자는 단속반을 피해 현장 반대편으로 도망쳐 미쳐 달리지 않은 현

장 뒷문 틈으로 빠져나옴. 뒤에서 단속반 3~4명이 계속 쫓아오고 한쪽편 길에도 단속차량과 단속반으로 보이는 1명이 지키고 있어 아래쪽 공장 3~4m 높이의 옹벽쪽으로 뛰어내림.

- 뛰어내리는 순간 무릎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도망치지 못했는데, 단속반 3~4명이 와서 보고는 119에 연락해 앰블런스가 와서 경주시내 병원으로 이송 입원시킴.
- 당일 이집트 이주노동자 7명 단속됨. (1명은 G-1 비자로 벌금내고 나옴)

⑤ 부상현황 : 좌측 비골 골절. (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발의 입방뼈의 골절(우측). 폐쇄성 우측 발목의 타박상. 다발성 발목, 발의 앞은 손상 (2017. 03. 06.~04. 12. 입원 38일 → 12월까지 8개월 물리·재활치료) 보험사 산정 노동능력상실을 8% (본인과실 50%)

3. 단속대응 및 출입국의 태도

① 단속에 대한 대응

- 2017. 03. 23. 울산출입국 항의방문 : 소장 면담거부~몸싸움~112 출동 등
- 2017. 03. 29. 울산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 2017. 04. 03.~04. 28. 울산출입국앞 농성투쟁(주간농성 20일)
- 2017. 04. 11. 울산출입국 규탄집회
- 2017. 04. 18. 울산출입국 협의 : 부상자 보험처리 입장
- 2017. 04. 27. 울산출입국 규탄 정부종합청사앞 기자회견(수도권)
- 2017. 04. 28. 울산출입국 규탄집회 및 농성 해제
- 요구사항 : (1)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2) 반인권적 강제단속 책임지고 울산출입국소장 사퇴
(3) 위법한 강제단속으로 부상 초래한 단속 담당자 징계
(4) 부상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

② 출입국 태도

- 울산출입국 소장 일체의 대화 거부 : 책임회피, 불통으로 일관
- 사건 축소, 왜곡, 은폐 기도
- 기타 : 보호일시해제(보증금 100만원), 출입국 가입 보험으로 처리

4. 단속의 문제점

①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 : 사무실에 올라와 여성 직원에게 서류 1장 던져주며 출입국이

라 통보. 이시각 이미 현장으로 진입해 단속 시작

- ② 집요한 추적 단속 : 현장 → 뒷문까지 쫓아오며 집요한 추적 단속
- ③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 보호명령서·긴급보호서 없고, 신분증 제시 요구·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단속
- ④ 안전대책 없는 단속 : 3~4m 높이 옹벽 등 위험요소 있었으나 어떠한 안전대책 없이 단속
- ⑤ 사건 축소·왜곡·은폐기도 : “사업주 동의 얻었다. 단속도 시작되기 전 단속차량보고 도망치다 발생한 사고다. 옹벽밑에 안전요원 배치해 뛰어내리지 말라고 했다. 단속영상 공개하겠다~단속영상 없다”는 등 거짓말 일관
- ⑥ 불통 행정 : 울산출입국 소장 대화 일체 거부하며 사태해결 외면
- ⑦ 부상자 방치 : 병원 입원후 9일만에야 사업주 수술보증금 200만원 납부한 후 수술
- ⑧ 책임지지 않는 단속 : 책임자 및 단속 담당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징계조치도 없었음

5. 이후 상황

- 보험사 보상 결정돼 피해자는 보상금 받아야 하고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퇴원시 납부한 의료지원비 환급받아야 하는데, 피해자 치료끝나자 잠적해버린 상태.
- 이집트 친구들을 통해 와서 사인만 하면 500여만원의 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오면 출입국에 넘겨버린다고 오해하고 친구들과도 연락끊음.

Ⅲ. 2017. 7월 단속

1. 기본개요

- ① 이 름 : C씨 <<L. S***** D. A. (사**)>>
- ② 국 적 : 스리랑카
- ③ 생년월일 : 1986. 11. 11. (남, 2017년 단속당시 만31세)
- ④ 입국시기 : 2008. 11월
- ⑤ 체 류 : E-9-1(제조업) 만료 → 미등록

2. 단속현황

- ① 단속일시 : 2017. 07. 04.(화) 16:00경
- ② 단속장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자동차부품공장 (원청→용역업체 소속)
- ③ 단속담당 : 울산출입국 단속반
- ④ 단속상황
 - 현장 작업중 현장 입구문을 통해 단속반 들이닥침. 단속반들은 ‘도망가지마’라고 소리 치며 잡으러 쫓아옴.
 - 피해자는 잡으러 오는 단속반을 피해 현장 반대편쪽으로 뛰어가 창문을 넘어 밖으로 도망침. 단속반 계속 쫓아오자 아래공장쪽 옹벽앞에 설치된 2m 높이의 철제 망펜스 넘기 시작함. 펜스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창문을 넘어 뒤쫓아온 단속반 1명이 펜스 위쪽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음.
 - 이 과정에서 약한 철제망 펜스가 흔들리고 당시 비가 내려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3~4m 높이의 옹벽(철제망펜스 포함 5~6m)에서 추락하며 정신을 잃음. 깨어보니 병원이었음.
 - 당일 스리랑카 2명 등 4명 단속됨.
- ⑤ 부상현황 : 무릎 슬개골 분쇄. 두개저의 기타 골절, 폐쇄성. 두피의 열린 상처 (2017. 07. 04.~08. 15. 입원 43일중 병원 탈출 잠적) (6개월 이상의 물리·재활치료와 100% 장애 남을 것이라는 진단 있었음)

3. 단속대응 및 출입국의 태도

- ① 단속에 대한 대응
 - 2017. 07. 10. 경주동국대병원에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피해자 강제이송 대응
이 과정에서 울산출입국 직원 경주이주노동자센터 활동가들 폭행
 - 2017. 07. 11. 울산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 2017. 07. 12. 광화문종합청사앞 울산출입국 규탄 기자회견(수도권)
 - 2017. 07. 24.~07. 28. 서울+울산+대구 동시다발 출입국앞 1인시위
 - 2017. 07. 2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면담(민주노총 등 4명 참석)
 - 2017. 07. 26. 울산출입국 규탄 영남권 결의대회
 - 2017. 07. 27. 울산출입국 소장 면담(처음으로 면담자리에 나옴)
 - 요구사항 : (1)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폭력적 강제단속 중단
(2)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울산출입국소장 사퇴
(3) 폭력단속 및 폭행당사자 파면
(4) 부상 이주노동자 책임 및 사건은폐 중단
- ② 출입국 태도

- 2017. 07. 10. 경주동국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으로 피해자 강제이송
- 2017. 07. 12. 울산출입국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찬 언론 설명자료 배포
- 2017. 07. 2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면담(사무관 등 2명 참석)
- 2017. 07. 27. 울산출입국소장 면담 (처음으로 참석)
- 2017. 08. 이주활동가 폭행 당사자 인사조치
- 2017. 08. 15. 피해자 부산의료원 탈출→대구 모교회로 가서 대구 다른 병원에 입원
(이 과정에 울산출입국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됨)

4. 단속의 문제점

- ① 집요한 추적 단속 : 현장 → 창문넘고 철제망 펜스 넘어가는 것까지 쫓아오며 단속
 - ②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 보호명령서·긴급보호서 없고, 신분증 제시 요구·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단속
 - ③ 안전대책 없는 단속 : 3~4m 높이의 옹벽 등 위험요소 있었으나 어떠한 안전대책도 없이 단속. 더욱이 비가 오는 날이었음에도 단속 감행
 - ④ 부상자 강제 이송 : 입원하여 수술 대기중인 환자를 이주단체 개입하자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강제 이송. 이로 인해 부상당한지 13일째인 2017. 07. 17.에 5시간30분에 걸친 대수술
 - ⑤ 사건 축소·왜곡·은폐 기도 : 부상 피해자 강제이송, 언론 설명자료 배포 등 사건 축소·왜곡·은폐하기에 급급. (피해자 병원 탈출 잠적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됨)
 - ⑥ 이주활동가에 대한 폭행 : 강제이송에 항의하는 이주활동가들 폭행. (기소유예 처분)
 - ⑦ 책임지지 않는 단속 : 책임자 및 단속 담당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징계조치도 없었음. (폭행당사자 인사조치는 법무부장관 취임후 인사이동에 따른 조치로 보임)
- ※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 여부 : 사업주 비협조로 파악안됨. (벌금 감면 등으로 회유 추정)

5. 이후 상황

- 피해자 잠적으로 대응 중단.

IV. 2017. 9월 단속

1. 기본개요

- ① 이 름 : D씨 <<NGUYEN *** ***** (응****)>>
- ② 국 적 : 베트남
- ③ 생년월일 : 1983. 09. 02. (남, 2017년 단속당시 만34세)
- ④ 입국시기 : 2011. 03월
- ⑤ 체 류 : E-9-3(농축산업) 중도이탈 → 미등록

2. 단속현황

- ① 단속일시 : 2017. 09. 04.(월) 15:00경
- ② 단속장소 : 경북 경주시 천북면 자동차부품공장 (원청→용역업체 소속)
- ③ 단속담당 : 울산출입국 단속반
- ④ 단속상황
 - 공장으로 7~8명 정도의 단속반 들이닥침. 당시 사장은 회사내에 없었는데 이사가 쫓아와서는 “우리 회사는 불법없다. 다 결혼한 여자들뿐이다. 안된다”고 소리쳤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 시작.
 - ※ 회사의 항의 때문이었는지 이날 단속에서 출입국은 “다 나와라. 등록증 내 보여라” 하고 등록증이 없던 2명을 단속했다고 함.
 - 공장 안쪽에서 작업중 단속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현장 끝에 있는 창문을 넘어 도망침. 창문 바깥쪽은 공장밖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였는데 여기에 단속반원 1명이 지키고 있어 이를 피해 도망치자 “여기 사람있다. 도망친다”고 소리치며 지원을 요청함.
 - 앞공장 틈새길을 지나 옥수수밭쪽으로 도망침. 뒤에서는 단속반 4~5명이 계속 쫓아왔고 옥수수밭 안까지 약 200m 도망쳤는데 울퉁불퉁한 밭고랑에 걸려 넘어짐. 다시 일어났지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절뚝거리며 옥수수밭안에 숨었지만 뒤쫓아온 단속반원들에게 잡힘. 이때 단속반원 1명은 화를 내며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부상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함.
 -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자 단속반원들이 부축해 차량에 태워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집으로 돌려보냄. 다음날 경주 병원에 입원.
 - 당일 베트남+필리핀 여성이주노동자 2명 단속됨
- ⑤ 부상현황 : 발꿈치뼈의 골절(폐쇄성) 좌.

(2017. 09. 05.~09. 25. 입원 21일 → 2019. 2월말까지 5개월 물리치료)

3. 단속대응 및 출입국의 태도

① 단속에 대한 대응

- 2017. 09. 13. 울산출입국 항의방문
- 요구사항 : (1) 울산출입국소장 사퇴
(2) 울산출입국 단속팀 해체 및 단속중단
(3) 추적단속·폭력단속 담당자 징계
(4) 피해자에 대해 산재에 준한 치료 및 보상

② 출입국 태도

- 부상자 곧바로 병원 후송 (울산중앙병원 → 경주큰마디병원)
- 출국명령유예 조치
- 즉각 보험 처리 및 병원비 지급

4. 단속의 문제점

- ①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 : 회사 이사가 단속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단속 진행
- ② 집요한 추적 단속 : 현장 → 창문넘고 → 옥수수밭까지 쫓아오며 집요한 추적 단속
- ③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 보호명령서·긴급보호서 없고, 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단속
- ④ 인간적 모멸감까지 동반한 폭력단속 : 부상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참
- ⑤ 책임지지 않는 단속 : 책임자 및 단속 담당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징계조치도 없었음

5. 이후 상황

- 치료후 출국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남.

V. 2018. 4월 단속

1. 기본개요

- ① 이 름 : E씨 <<W. S***** (사**)>>
- ② 국 적 : 태국
- ③ 생년월일 : 1984. 04. 17. (여, 단속당시 만34세)
- ④ 입국시기 : 2017. 02월
- ⑤ 체 류 : 무비자 관광입국 → 미등록

2. 단속현황

- ① 단속일시 : 2018. 04. 25.(수) 14:30경
- ② 단속장소 : 경북 영천시 소재 자동차부품공장 (원청→용역업체 소속)
- ③ 단속담당 : 대구출입국 단속반
- ④ 단속상황
 - 회사 사무실에 출입국 직원이 와서 여직원에게 단속 통보. 이때 이미 공장내로 스타렉스 3~4대가 먼저 들어오고 버스가 따라 들어와 현장 입구 큰 출입문앞에 주차시키며 현장 봉쇄. 공장 주변에 단속반원들 포진해 있고, 단속반은 현장진입하고 있는 상태.
 - 한국인 직원이 '출입국이다 도망가'라 외치고 현장내에는 이미 도망가고 잡히고 하는 상황. 피해자는 잡으러 뛰어오는 단속반원을 피해 현장 끝쪽에 있는 공구창고로 가서 1.5m 높이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림. 뛰어내리자마자 무릎 통증으로 쓰러짐. 이미 공구창고안에 있던 남자 단속반원이 수갑을 채워 다른 이주노동자에게 부축시켜 호송버스에 태움.
 - 대구출입국에 도착해서도 출입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2층 보호실에 수감. 이날 저녁 무릎통증 호소호자 진통제 1알 줌. 둘째날 오후에 출입국 근처 병원에 데려갔는데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나왔음에도 다시 출입국으로 데려감. 셋째날 용역업체 사장에게 보증금 300만원 내게하고 보호일시해제로 떠넘김. 집으로 와서 통증 참다 1주일후인 2018. 5. 2.에야 경주시내 병원에 입원.
 - 당일 태국+스리랑카 등 이주노동자 24명 단속됨.
- ⑤ 부상현황 : 전 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내측,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좌측

(2017. 05. 02.~06. 25. 입원 55일 → 1~2개월 물리치료후 귀국)
보험사 산정 노동능력상실율 9.7% (본인과실 50%)

3. 단속대응 및 출입국의 태도

① 단속에 대한 대응

- 2018. 05. 10. 대구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및 출입국소장 항의방문
- 2018. 05. 14.~06. 15. 대구출입국앞 1인시위
- 2018. 06. 15. 대구출입국 규탄 집회(전국동시다발)
- 2018. 0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민변대구지부 지원) : 현재 진행중
- 요구사항 : (1)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단속 중단
(2) 보호소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장
(3) 대구출입국 소장 책임
(4) 폭력단속, 응급환자 방치 출입국 직원 징계
(5) 반이주노동자정책인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철회

② 출입국 태도

-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조치없이 방치, 2박3일동안 구금.
- 보호일시해제(사업주 보증금 300만원 납부)로 부상 이주노동자 사업주에게 떠 넘김.
- 항의방문후에야 출입국 가입 보험 처리

4. 단속의 문제점

- ①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 : 대구출입국 단속팀장 스스로 사무실 여직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사업주 동의없이 단속. 사무실에 통지할 때 이미 단속 시작함.
- ② 집요한 추적 단속 : 위험한 현장에서 뛰어오며 단속. 도망치자 추적 단속해 결국 부상까지 초래.
- ③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 보호명령서·긴급보호서 없고, 신분증 제시 요구·미란다 원칙 고지없이 단속.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 이주노동자에게 수갑 채움.
- ④ 반인권적·비인도적 부상자 방치 : 부상 발생시 즉시 상부보고후 지시받아 필요한 조치 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병원 후송 않고 출입국에 구금 → 통증 호소에 진통제 1알 투여 →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나왔음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입원도 시키지 않고 다시 출입국에 구금 → 병원 입원이 아니라 보증금 300만원 받고 사업주에게 피해자 떠 넘김. 결국 부상당한지 14일후인 2018. 5. 8.이 되어서야 수술.

- ⑤ 책임회피 : “발목 뺨 줄 알았다. 본인이 괜찮다고 했다”는 등 책임회피 변명으로 일관
- ⑥ 책임지지 않는 단속 : 책임자 및 단속 담당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징계조치도 없었음

5. 이후 상황

- 물리치료 진행중 보상금 지급되자 2018. 8월 출국
- 국가인권위 진정 사건 진행중이기에 계속 연락하고 있음. (본인 진술서 작성 등...)

VI. 단속~부상이 반복되는데는 이유가 있다...

1. 출입국의 태도

- ① 위법적 단속 :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 → 집요한 추적단속 →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 안전대책없는 단속 → 폭력단속 등 반복되는 위법적 단속이 결국 부상·사망까지 초래. 현재와 같은 단속 방식하에서는 대형사고가 자주 안 터지는데 오히려 이상할 정도.
- ② 실적위주 단속 : 출입국 직원의 “그거 다 지키면서 어떻게 단속하냐? 단속하지 말란 얘기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또 부상·사망 초래한 출입국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전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이 반복되는 사고 초래.
- ③ 책임 회피 : 지방 출입국에서는 “위에서 단속하라는데 어떻게 안할 수 있냐? 여기와서 이러지 말고 위에다 얘기해서 단속없도록 해달라”며 책임을 미루고, 여기에 더해 사고가 발생하면 은폐·축소·왜곡을 일삼으며 파장을 줄이다 결국 치료비 등 보험처리로 마무리.
- ※ 기타 : 출입국은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단속사업장 임금만 빨리 지급하게 하고 출국시키려다보니 축소지급 합의가 자주 발생. 퇴직금,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국민연금이나 이전 사업장 체불금품 해당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쓰지 않음. 또 부상 등 사고발생시에는 사업주에게 벌금 감면 등으로 회유해 위법사항 무마하고, 이주·인권단체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도 함.

2. 이주단체들의 대응

- ① **결과에 대한 대응** : 단속추방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 단속시 폭행·부상·사망 등이 발생해야 단속결과에 따른 사후적 대응.
- ② **반복되는 대응 방식** : 사후적 대응방식도 항의방문 → 기자회견 및 성명서 → 1인시위 → 농성 → 집회 등 반복. 각 지역공대위로 대응하고 있으나 역량의 한계 보이고 있음.
- ③ **높은 요구, 못미치는 마무리** : 단속추방 중단·출입국소장 사퇴 등 최초 요구는 높는데, 부상자 치료비 등 일부 해결되면 마무리하는 한계.

3. 이주노동자들의 비주체화

- ① **분노보다는 위축** : 단속 자체에 대해 나아가 폭행·부상·사망 등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하기도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더 위축되어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
- ② **현실적 해결** : 부상 당사자들도 현실적 치료비, 보상 등이 이루어지면 마무리하려는 경향.

구	분	A	B	C	D	E
인적사항	국적	중국	이집트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성별	여	남	남	남	여
	생년월일	1994년생 (당시 만22세)	1993년생 (당시 만24세)	1986년생 (당시 만31세)	1983년생 (당시 만34세)	1984년생 (당시 만34세)
	입국시기	2014. 8월	2015. 10월	2008. 11월	2011. 03월	2017. 02월
	체류	D-4-1(일반연수) → 미등록	G-1(난민 신청) → 미등록	E-9-1(제조) → 미등록	E-9-3(농축산) → 미등록	무비자 관광입국 → 미등록
	고용형태	용역업체 소속	용역업체 소속	용역업체 소속	용역업체 소속	용역업체 소속
단속현황	단속 일시	2016. 03. 02.(수) 15:20경	2017. 03. 06.(월) 15:20경	2017. 07. 04.(화) 16:00경	2017. 09. 04.(월) 15:00경	2018. 04. 05.(수) 14:30경
	단속 장소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공장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 포장공장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공장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공장	경북 영천시 자동차부품공장
	단속 담당	부산출입국 (영남권 광역단속팀)	울산출입국 (영남권 광역단속팀)	울산출입국	울산출입국	대구출입국
	단속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경비실에 통보하고 단속 시작. 원청 관리자의 '피해'라는 소리를 듣고 2층 작업장→1층 컴프레서실→컴프레서 실 창문밖으로 나와 숨음. 컴프레서실→창문밖까지 쫓아온 단속반에 잡힐. 잡힌 손 뿌리치고 아래공장쪽으로 도망침. 45도 경사면 끝나고 3~4m 옹벽에 다다랐으나 그대로 뛰어 내려 발목 다짐. 아래 공장에 30여분 숨어있다 피해 단속되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사무실 여직원에게 단속 통보. 단속반이 현장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대편 현장 뒷문으로 도망침. 3~4명의 단속반이 계속 쫓아오고, 한쪽 편에는 단속차량과 단속반원이 있는 것을 보고 그쪽을 피해 아래쪽 공장 3~4m 높이의 옹벽이 있는 곳에 다다름. 단속반 계속 쫓아와 그대로 뛰어내림. 일어나지 못하자 단속반이 119 불러 병원으로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작업중 단속반 들이닥치자 이를 피해 반대편 창문을 넘어 도망침. 단속반 계속 쫓아와 아래공장쪽 옹벽앞에 설치된 2m 높이의 철제망 펜스 넘어감. 펜스를 반쯤 넘어갔는데 뒤쫓아온 단속반이 펜스 잡고있는 오른팔을 잡음. 약간 철제망 펜스가 흔들리고 당시 비가내려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3~4m 높이의 옹벽(펜스 포함 전체높이 5~6m)으로 추락해 정신을 잃음. 깨어보니 병원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반 들이닥치자 회사 관리자가 항의했으나 아랑곳 하지 않고 단속 시작. 현장 작업중 들이닥치는 단속반 피해 반대편 창문을 넘어 도망침. 단속반 계속 쫓아오자 옥수수밭쪽으로 200m쯤 도망치다 발고랑에 걸려 넘어짐. 발을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자 뒤쫓아온 단속반에 잡힐 뻔을 맞고 허벅지 걷어차임. 울산 중앙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경주 큰마디병원으로 와서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사무실 여직원에게 단속 통보. 공장내 현장입구에 버스 주차시켜 봉쇄하고 단속 시작. 작업중 단속반 들이닥치자 이를 피해 현장끝쪽 공구창고로 가서 1.5m 높이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림. 뛰어내리자 마자 무릎통증으로 쓰러지고 단속반원에게 수갑 채워짐. 심사인대파열 상태에서 2박3일간 대구 출입국 보호실에 있다가 사업주에게 보증금 300만원 납부케하고 떠남김.
	단속 인원	중국+베트남 등 여성이주노동자 10여명	이집트 이주노동자 7명	스리랑카 2명 등 4명	베트남+필리핀 여성이주노동자 2명	태국+스리랑카 등 25명
	부상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골 골절 입원 55일 → 약 4~5개월 물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측 비골 골절+경골 상단 골절 등 입원 38일 → 8개월 물리+재활치료 장해 : 노동능력상실율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릎슬개골 분쇄+두개저 골절 등 입원 43일째 2017.08.15. 병원 탈출 잠적 (대구에서 입원 치료받았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꿈치뼈의 골절 입원 21일 → 5개월 물리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십자인대 파열-경골상단 골절 등 입원 55일 → 1~2개월 물리치료 장해 : 노동능력상실율 9.7%
단속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 추적단속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안전대책없는 단속 부상자 방치 책임지지 않는 단속 남성 단속반 중심의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 추적단속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안전대책없는 단속 부상자 방치 책임지지 않는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적단속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안전대책없는 단속 부상자 강제 이송 책임지지 않는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 추적단속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인간적 모멸감까지 동반한 폭력단속 책임지지 않는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동의없는 단속 추적단속 인권보호준칙 무시한 단속 부상자 방치 책임지지 않는 단속 	
단속에 대한 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출입국 및 부산출입국앞 기자회견 대구+부산출입국소장 항의방문 대구출입국앞 1인시위(4/18~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출입국앞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울산출입국 규탄 집회(3차례) 울산출입국앞 농성투쟁(4/3~4/28) 전국에서 규탄 성명서+규탄 현수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출입국앞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울산출입국 규탄 영남권 결의대회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7/24~7/2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면담(민주노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출입국소장 항의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출입국앞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대구출입국앞 1인시위(5/14~6/15) 대구출입국 규탄집회(전국동시다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출입국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출입국소장 유감 표명 치료비 보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출입국소장 대화 일체 거부 사건 축소 왜곡 은폐 기도 치료비 보험처리(농성투쟁후야 뒤늦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 축소 왜곡 은폐 기도 이주활동가에 대한 폭행 취약계층 의료지원+출입국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출입국 소장 유감 표명 치료비 보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상 이주노동자 방치 사건 축소 및 책임회피 치료비 보험 처리 	

살인단속규탄 및 미얀마노동자 탄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활동과 진상 규명의 문제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 인권운동공간 활 | 랑희

1.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Than Zaw Htay) 사망 사건 개요

탄저테이는 미얀마 출신 노동자로 2013년경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고, 2018년 2월 13일 비자만료 되었다. 1년 정도 한국에서 일을 더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귀국을 미룬 채 미등록체류자 신분으로 김포 구레동 6886-4 (금성백조 예비뉴 스완 주상복합 건물 건설)에서 근무했다.

2018년 8월 22일 낮 12시 5분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건설 현장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단속을 개시했다. 사건 현장인 '내부식당'은 공사 현장 윗타리인 시설 가림막 안에 있는 컨테이너 임시 건물이었다. 단속반원들은 단속 전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당시 식당에는 약 70명의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미등록체류자 50~60여명, 그 외 등록체류자와 한국인). 단속반원 중 8명이 식당 안으로 진입하여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자, 단속을 피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의 시도와 이를 제압하려는 단속반원들의 조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은 식당 안에 있던 인원 다수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

당시 단속에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11명(단속반 8명, 운전원 2명, 사회복무요원 1명),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직원 10명(단속반 7명, 운전 3명)이 참여하였다(총원 21명, 단속반원 15명). 사건 당일 중국, 베트남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운데 36명이 붙잡혔다. 미얀마 팀 9명 가운데 5명이 붙잡힌 뒤 본국에 보내졌다.

당시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탈출한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는데, 탄저테이는 창문을 넘은 뒤 공사장 7.5m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 이후 119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18일간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8년 9월 8일 사망하였다.

탄저테이의 아버지는 사고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입국한 뒤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해 한국인 4명에게 장기가 기증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다수의 언론에 단속으로 인한 사고와 장기기증에 관한 사실이 보도¹⁰⁾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10) 불법체류 단속에 사망...한국인에 '장기기증', MBC, 2018.09.22.,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39986_22663.html

2. 살인단속규탄 및 미얀마노동자 탄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살인단속규탄 및 미얀마노동자 탄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소식을 접하게 되어 뒤늦게 구성되었다. 피해자는 이미 고인이 되어 장례를 치른 뒤였고, 가족 역시 본국으로 떠난 상황이었지만 폭력적인 단속의 문제는 사라진 채 미담으로만 남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책위가 구성되었다.(12개 단체 대책위 참여)

■ 활동경과

- 2018.9.27 김포 건설업 미얀마노동자 사망사건 대책회의
- 2018.9.30 법무부 죽음의 단속 규탄·미얀마노동자 탄저테이씨 죽음의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 (부평역)
- 2018.10.5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구성
- 2018.10.16 살인단속 중단 및 탄저테이 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서명 진행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추방 중단/탄저테이 씨 죽음의 진상규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진상규명 촉구 서명용지 전달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소장 면담 요청했으나 거부
- 2018.10.21 탄저테이 미얀마노동자 극락왕생 발원과 살인단속 규탄 추모제 (부평역)
- 2018.10.22 인권위 및 CERD 한국심의대응사무국 간담회 참석
- 2018.10.23 미얀마노동자 죽음 진상규명 촉구 살인단속 규탄대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2018.11.1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면피성 졸속 NGO 간담회 규탄 성명 발표
- 2018.11.7 살인단속 무혐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경찰청)
- 2018.11.16 법무부 면담
 - 1분 미만 소리없는 영상 확인김포경찰서 면담
- 2018.11.19 살인단속 미얀마 탄저테이 노동자 진상규명을 위한 오체투지
- 2018.11.29 <대책위가 열람한 단속 영상의 내용과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과정에서의 의문점> 보도자료 배포
- 2018.12.5 법무부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중단 촉구 집회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 법무부 이민조사과 면담, 소리 포함한 3분가량의 영상 확인
- 2018.12.17 <단속으로 추락한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씨 사망 100일,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법무부와 문재인정부 규탄 기자회견> 청와대 앞

<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법무부,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

보도자료 배포

- 2018.12.21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 2018.12.25 탄저테이씨 아버지 한국 방문
- 2018.12.28 탄저테이씨 아버지와 대책위 간담회
- 2019.1.2 탄저테이씨 아버지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간담회
고 김용군님 어머니와 탄저테이 씨 아버지 만남
- 2019.2.12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 발표
- 2019.2.15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견서
- 019.2.26 탄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을 명시한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 법무부 면담 거부
- 2019.3.20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씨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면담 거부에 대한 항의방문 진행
- 2019.3.26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청장면담, 사망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
책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 답변 거부

■ 대책위 요구

1. 진상규명 · 책임자 처벌
2. 살인단속 폭력단속 즉각 중단
3.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탄압 중단
4. 미등록 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 방안 마련

3. 진상규명 활동

1) 진상규명의 의미

진상규명 활동은 대책위 활동의 목표(요구)를 향해가는 첫 단계이다. 진상규명을 통해 사건의 내막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즉,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구체적 행위와 사망과의 연관성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단속에 앞선 과정과 사건 발생 이후의 대처를 포함한 총체적인 단속의 맥락을 포괄한다. 사건에 관한 정보와 개별적인 폭력행위를 넘어 어떤 식으로 폭력이 작동되었으며, 폭력은 어떻게 정당화·관성화되었으며, 어느 집단이 어떻게 관여했는

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럴 때 진상규명은 하나의 사건에 멈추지 않고 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2) 진상규명 과정

대부분 단속 과정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단속된 피해자나 목격자는 외부와 격리된 채 추방되어 사건에 대해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쉽다. 또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불법’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상황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투쟁하기 힘든 조건이 된다.

판타테이씨 사망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다행히 단속을 피한 목격자가 용기를 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었다. 대책위는 두 명의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 경위와 문제점 확인했다. 최초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진입
- 욕설, 수갑사용 등 폭력적인 단속 과정
- 출입국 직원의 제지로 추락
- 긴급 구조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구급차 출동까지 상당한 시간 경과)
- 추락 이후에도 지속된 단속
- 사망 사유 기록 문제(자살)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들의 대부분은(사망 사유 기록 문제는 제외)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목격자의 증언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거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함으로써 진상을 밝히려 시도했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청구
- 국회의원을 통한 자료요청
- 법무부와의 면담 과정을 통해 자료 요청
- 형사고소를 통한 자료 접근
- 재판을 통한 자료 접근
- 국가인권위 진상조사

4. 진상규명 활동의 한계

1) 공공정보 접근 불가능

①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거부

대책위는 당시 단속과 관련해 법무부에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당시 바디캠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또다시 비공개 처리되었다. 이후 법무부와의 면담에서 재차 자료를 요청했으나 2차 면담에서 법무부는 대책위가 요청한 자료 일체에 대해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을 통한 자료요청 역시 법무부로부터 받지 못했다.

■ 대책위가 요구한 자료

1. 단속계획서, 단속활동보고서, 당시 현장에 지참·사용한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 수불대장
2. 단속교육 실시 여부
3. 단속 과정을 기록한 카메라(사진, 동영상 모두) 대수와 채증영상
4. 단속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계획 및 조치
5. 단속 중 추락사고 발생 이후 보고한 내용과 이에 대한 지시내용 및 조치
6. 해당 단속과 관련한 보호명령서와 당시 현장에서 발부한 긴급보호서
7. 사고발생 이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이민조사과 등 관련 부서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조사·검토한 진상조사 보고서
8. 단속과정에서 사상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법무부 및 각 출입국 매뉴얼
9. 사건이 일어난 전과 후 몇 건의 단속들이 진행되었는지(월별 단속 건수), 최근까지 어떤 사상사고가 있었는지(월별 사상건수), 안전대책에 대한 조치 여부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상기 청구내용은 단속방식 등 외국인 동향조사활동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단속직원 및 단속대상 외국인들의 신상정보가 담겨 있어 공개될 경우 범죄예방·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단속반원들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우려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 등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4호, 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은폐시도로 의심되는 법무부의 제한된 공개

법무부가 유일하게 공개한 정보는 창문 쪽 단속 직원의 바디캠 영상이다. 이 영상은 기자들에게만 공개되었다가 이후 법무부는 CERD(UN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 조계종 노동사회위원회에게 영상열람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출입국 내에서의 열람만 허가되었다.

초반 영상 공개에서는 판저테이씨가 등장하는 부분만을 잘라 1분가량의 영상만을 공개했다. 이후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며 문제 제기를 지속하자 법무부와의 2차 면담에서 전체영상이라며 3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도 당초 음성이 없는 상태로 공개하다가 음성이 없는 것이 원본이냐는 확인과 음성이 포함된 영상으로 공개하라는 항의를 계속한 뒤에야 음성과 함께 영상을 다시 공개했다.

영상 원본을 제공받지 못한 채 열람으로만 확인하는 과정은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가 표면적으로는 자료를 공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결국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은폐의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법적 절차를 통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

① 재판을 통한 자료 취득

형사고발이나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위의 활동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공동의 논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대책위가 구성되기 전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있었다. 이 변호사는 국가배상청구, 회사 측 손해배상, 산재 신청을 위임받아 진행할 예정이었다. 판저테이씨가 가입했던 보험사의 직원을 통해 소개받아 선임된 변호사로 대책위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협력은 불가능했고, 가족을 통해 대책위와 함께 하는 변호사로 다시 선임하려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현재 재판 대응이나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재판은 대책위와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다.

② 형사고발을 통한 자료 취득

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고발은 사망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책위도 형사고발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김포경찰서는 이미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내사 종결하였다. 김포경찰서는 119 신고에 의해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판저테이씨의 추락이 단속 직원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단속 전체에서의 위법이 있었는가를 조사하지는 않아 다시 고발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가족의 위임을 받아 경찰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3) 국가인권위 직권조사에의 참여 불가능

대책위는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책을 촉구하며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유사한 사망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33차 상임위(2018.10.4.)에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는 피조사기관 진술(인천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법무부), 참고인 진술(목격자, 현장 관리자), 관계기관 담당자 진술(구급대원, 경찰, 병원)과 피조사기관들이 제출한 자료, 참고기관이 제출한 자료, 출입국·외국인청 직원 11명과의 면담 조사 결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대책위는 인권위의 직권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수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만 조사결과 발표 전 면담을 요청해 대책위가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과 의문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4) 책임을 부정하면서 시민사회 개입에 대해 거부한 법무부

대책위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며 방어했다. 법무부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반박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대책위는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밝혔던 내사 종결한 경찰 조사는 법무부에 면죄부를 주었다. 단속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조사하지 않고 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만을 찾는 경찰조사는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도 없으며, 사건의 원인을 협소하게 판단하는 결과를 만들뿐이었다.

법무부는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판저테이씨가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법무부는 단속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발적 사고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도 단속 업무에 대한 점검을 하기보다는 단속을 지속하는 태도를 보였다. 판저테이씨가 병원에 뇌사상태로 있던 한 달 동안 법무부는 서민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건설업에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들을 집중 단속할 것이고, 외국인들은 ‘윌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서 한 번만 단속이 되도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공표했다.¹¹⁾ 대책위 활동 기간에도 단속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나서서 미등록 이주민들을 서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선주민들의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불안과 혐오의 감정을 조장하면서 단속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여론의 힘을 얻기는 어렵다.

단속과정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한 번도 보이지 않은 법무부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책위의 면담 요청도 거절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사건 발생 이후 대책위의 면담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출입국을 비롯한 법무부는 대책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외부의 개입과 통제를 거부했다. 이는 그동안 적어도 단속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민주적 통제나 투명한 행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 법무부, [이민조사과] 법무부, 40~50대 가장의 마지막 피난처 건설현장 강력단속, 2018.09.20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99>

5. 나가며: 진상규명으로부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까지

대책위가 국가로부터 진상조사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의 조사나 정보 접근이 부정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증언자가 있었기에 대책위는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었고,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가능했기에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법무부가 권고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결과 발표 직후 사과부터 해야 했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역임한 프리실라 B. 헤이너는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인정이란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진실이면서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취급된다는 것이다.¹²⁾ 현재 법무부의 태도를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히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공식적인 인정은 공식적인 부인의 강도에 비례해 그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¹³⁾ 법무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노력과 대책이 시작될 것이다.

대책위는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과연 국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졌었는지, 최소한 담당자가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은 적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불처벌은 인권침해를 반복하게 하고 폭력에 둔감하게 만든다. 결국 국가의 폭력이 반복되어도 그것에 대한 의문조차 갖지 않게 된다. 처벌은 개인을 단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폭력인지, 왜 폭력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상규명이 인권침해를 한 개별행위와 가해자를 찾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을 찾는 과정은 '왜'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피해당사자들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가'이다. 그저 표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넘어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넘어서, 이러한 행위들을 둘러싼 더 큰 배경과 맥락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책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단속과정에서 '안전함'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해 의문을 갖는다. 과연 '안전한 단속'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저테이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은 하나의 사건에 멈추지 않고 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대책위는 이 사건이 단지 사망한 판저테이씨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속은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단속을 아직 당하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12) 프리실라 B. 헤이너,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역사비평사, 2008, 10쪽

13) 같은 책, 69쪽

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상조사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드러냄과 동시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다. 피해자들이 겪은 국가폭력을 말함으로써 사건의 맥락과 국가와 공권력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단속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제도적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과정을 돌아보며

_경기이주공대위 활동을 토대로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 다산인권센터 | 사월

1. 사건 경위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 단속이 진행되었고 A씨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는 이렇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단속반원(이하 단속반원)의 불심검문에 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두 명이 단속되었고, 기숙사에 들려 걸옷과 여권을 챙겨 가기로 하였다. 단속반원은 기숙사를 ‘동행’하게 되었다. 숙소에는 십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고, 단속반원이 왔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갔다. 대피할 방법을 찾아보던 중 건물 외벽에 늘어져있는 전깃줄에 몸을 맡겨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다 추락하였다. A씨가 문을 열지 않자 건물 밖으로 나간 단속반원은 “이미 추락해 있었다”며 현장에서 119구조대를 부른 후 병원 이송을 하였고 “보호자로 자처하는 이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다.

사고로 인해 A씨는 대퇴골(허벅지)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단속반원은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였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출국만 강요할 뿐이었다. 당시 안정적으로 머물 공간조차 없었던 A씨는 쉼터를 전전하다 지속되는 출국강요로 인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채 출국하였다.

2. 단속 과정에서의 문제점

1) 단순히 기숙사 ‘동행’? 기숙사에서 진행된 비인도적인 강제단속

단속반원은 불심검문을 통해 단속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짐을 챙기기 위해 기숙사를 ‘동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단속반원이 불심검문으로 단속된 노동자들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을까. 단속반원의 ‘동행’이 기숙사 내 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 강제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주지는 않았을까. 강한 의구심이 든다.

다시 상황을 복기해보는다면 “단속반원이 왔다”는 이야기가 숙소 내 노동자들에게 삽시간에 전해진 후, 추락사고가 발생한 상황은 단속반원이 단순히 ‘동행’하여 짐을 챙기는 이들을 ‘기다리기’만 했던 것일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단속반원이 기숙사에 들이닥친 것을 알게 된 노동자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A씨가 방문을 잠근 후 창문 밖 전깃줄을 잡고 내려 갈 수밖에 없던 것은 현상이 얼마나 다급하고 초조했던 것인지 알 수 있으며 단속반원이 비인도적인 강제단속을 진행하였다고 여겨진다.

3. 단속 이후 과정에서의 문제점

1) 노동자의 치료와 건강상태는 ‘관심 없음’, 실적 올리기만 급급할 뿐

다세대 건물 4층 높이에서 추락한 A씨는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응급실에서는 대퇴골(허벅지)골절, 폐 손상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치료가 시작됐다. 몇 차례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건강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던 A씨는 퇴원 후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한국어 통역과 퇴원 이후 머물 곳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가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던 중 병원으로 찾아온 단속반원은 강제출국명령서에 사인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단속반원은 A씨의 사인이 담긴 강제출국명령서를 이유로 출국날짜를 지정, 출국만을 강요할 뿐이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하게 된 경기이주공대위는 수소문 끝에 A씨의 한국어 통역을 지원하고 있는 종교단체와 연락이 닿았지만, A씨는 “너무 지쳤고 출국하고 싶다”고 전했다. 추락 사고가 있기까지의 과정, 사고 발생, 이후 반복되는 치료 과정 속에서 A씨의 몸과 마음은 상당히 지쳐있었다. 당시 발생한 일에 대해 마음을 돌볼 여유도 없었지만 머무를 공간조차 안정적이지 못하여 출국하기까지 여타의 주거공간을 전전하였다.

이런 상황들 중에 단속반원은 병원까지 쫓아와 출국을 강요한 것이다. 단속반원의 야만적인 행동은 A씨가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출국을 ‘선택’하도록 야기한 것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온전한 회복은 관심 밖이었으며 오로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청 과정에서의 문제점

1) 무책임하고 비겁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답변

해당 사건을 접한 경기이주공대위는 2018년 11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이후 조사과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경기이주공대위 소속 활동가들은

2018년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추락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오해의 측면이 있고 억울하다”며 “A씨에게 출국명령서를 발부한 것이며 치료 후 자발적으로 출국하라는 것이지 강제 퇴거시키는 것이 아니며 치료를 받아야하는 시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다. 또한 “어떻게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전혀 없겠냐며 현재 폭력적 단속은 하지 않고 일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답변을 반복했다. 또한 관련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표명을 하라는 요구에도 명확한 대답 없이 얼버무릴 뿐 이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면담 진행 후 지금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속과정이 어떠한지, 추락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긴급이송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호자로 자처하는 이’는 누구며 그 당시 단속반원은 무엇을 했는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A씨에게 사인을 요구한 이유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했다는지, 치료받고 있는 이에게 왜 그렇게 출국을 강요하였는지, A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인지 등 문제점을 짚었지만 돌아온 것은 ‘오해’라는 답변이었다. 심지어 A씨의 증상이 비인도적인 강제단속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비겁한 태도였다.

5.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

- 비인도적 강제단속이 가능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 강제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권리의식 부재.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정부의 비인도적이며 단편적인 시각-단속 강화로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 강제단속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
-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정부와 공권력의 지속되는 탄압.
- 강제단속으로 사상자 발생 시 병원비 등 충분하지 않는 지원



전체 토론

발제문

미등록이주민 양산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 문제

김태정(두레방 쉼터)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여성 한국 내 성착취 피해 현실

두레방 쉼터(외국인 지원시설) | 김태정

1. 여는 말

두레방은 86년부터 의정부의 기지촌에서 그 지역 성착취 인신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이 한국여성이던 기지촌에 90년대 중반부터 E-6 비자 소지 이주 여성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90년대 말에는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의 80~85%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E-6비자 제도는 기존 성산업 운영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한국 여성들이 떠나간 자리를 외국 여성으로 ‘대체’하며 성착취, 임금착취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지속시키는 직·간접적인 기능을 해왔다. 더군다나 초기에 미군전용 업소에 국한되었던 이주 연예인 도입은 현재 지방 중소도시와 항구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간 사증면제(B-1)로 한국으로 태국, 러시아, 중남미 여성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므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한국의 성산업에 유입되어있는 지 수치로 알기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여성들은 본인들이 가진 위치가 한국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고 있어 정작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험이 있음에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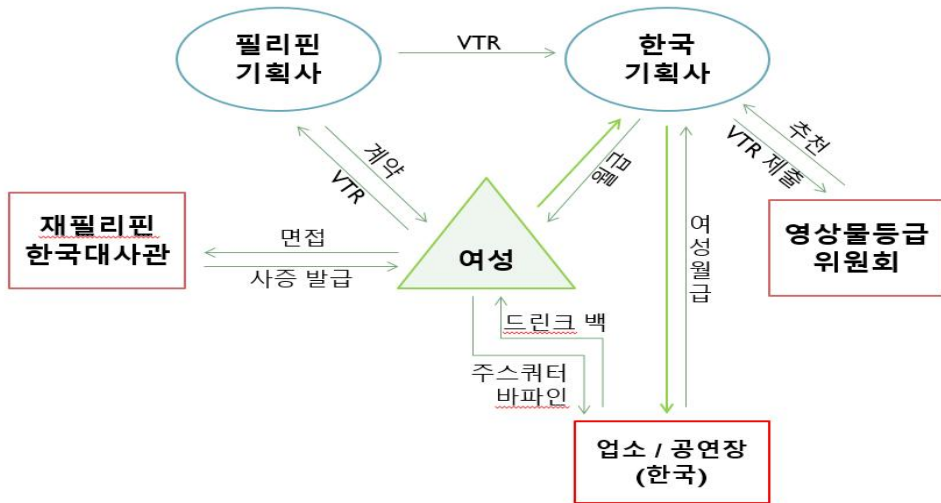
2. 필리핀여성 사례(E-6-2)

90년대 중순 러시아, 필리핀의 E-6비자소지 여성들은 기지촌(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과 한국관광호텔 중심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정부는 E-6비자의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한국정부에 E-6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2003년 6월에 러시아권 국가들에 대하여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

아래의 표2는 E-6-2소지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복잡한 과정과 유입되어 한국 내에서 어떻게 착취 받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주 여성들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상의 근무환경 및 급여와는 사뭇 다른 현실 속에서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고용주인 외국인 공연기획사와 클럽업주, 클럽의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들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주 여성들은 타국의 낯선 환경에서 강제되는 여러 상황들로부터 저항하거나 벗어나기 힘들다. 불이익 속에서도 명시된 계약기간을 이행해야만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클럽에서 도망침)을 하는데 이 경우 미등록 상태가 되어 (E-6 비자는 취업을 전제로 발급되며 여성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클럽 업주들이 이탈 즉시 출입국에 신고한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표2. 이주여성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정]



- E-6-2비자 소지 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략 몇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기획사와의 임금문제. 이주여성들은 실제로 고용관계에 있는 기획사로부터 상습적, 지속적으로 임금착취 또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 기획사는 여성들이 일하는 기간 내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만들어 그녀들 급료의 절반을 가져간다. 임금은 기획사들이 여성을 장악하는 매우 유용한 주요무기로서, 여성들에게는 임금체불이 성매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차적 기제로 작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업소에서의 성매매강요. 여성들의 근무처인 클럽, 즉 일터에서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업주와의 관계 역시 여성들의 삶을 위협한다. 업주들은 급료(140~150만 원 가량)를 여성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고용되어 있는 기획사에게 건넨다. 클럽의 업주들은 여성을 보내준 기획사에 줄 월급을 마련하고 자신들의 이익도 창출하기 위해 주스할당량(주스쿼터)과 성매매(바파인 Bar Fine)를 여성들에게 강요한다. 이러한 주스쿼터와 바파인은 클럽마다 정책이 상이한데, 대충 한 클럽 당 여성에게 할당되는 주스는 한 달에 200잔~500잔 정도이다. 주스는 한 잔당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이고 여성들은 한 잔당 10~20퍼센트의 커미션을 받는다. 바파인은 소위 2차성매매를 지칭하는 말로서 200달러~250달러 정도를 업주가 직접 성구매자들에게 받는다. 이를 견디지 못한 여성들은 클럽을 탈출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외국인전용음식점인 아닌 일반 한국남성으로 상대하는 유흥업소(룸노래장)등으로 유입 시킨다. 여성들은 테이블차지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기본 2시간 남성들과 룸에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 안에서 신체적, 성적 폭력이 있어 업주에게 항의를 해도 2시간을 채우라는 대답만 받을 뿐이다. 거절의사가 있을 시 성매매만 하는 클럽으로 보낸다는 협박으로 여성들은 손님으로 초이스를 당하지 않으려 애쓴다.

네 번째는 정부의 정책부재의 문제 즉 강력한 처벌 시스템의 부재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들이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었을 때 이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창구가 없고 중재할 수 있는 기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보호해줄 안전망이 없다는 점이다. 더 더욱 나쁜 것은 상승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업주나 매니저가 처벌되지 않은 채로 또는 솜방망이 처벌 후에 여전히 새로운 여성들을 수입할 수 있고 이 여성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똑같이 기지촌의 외국인전용클럽이나, 일반 유흥업소로 여성들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업주들이 또다시 불법적인 일을 해도 무방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이 처하게 되는 어려움은 사실상 적절한 정책이 도입되면, 그리고 관계당국이 강력한 처벌 시스템을 갖추고 집행한다면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다.

그 외의 문제점으로 기획사가 여성들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고 의료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비싼 병원비를 내고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여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인권침해를 고발하려 하여도 한국의 공공기관인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의심과 무서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여성들을 타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필리핀 등 아직 민주주의가 채 정착되지 않은 국가의 공무원들의 경우 부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공무원들 역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한국 경찰이나 출입국에서 이 여성들을 차별적이지 않은 평등한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당한 피해를 쉽게 고발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안고 귀국하곤 한다.

3. 태국여성(사증면제B-1)¹⁴⁾

여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사증면제가 되는 일부 다른 국가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별로 마사지 구인 광고가 있고 활발한 SNS으로 마사지 구인광고를 접할 수 있다. 여성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또는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등 개인적으로 연계가 되어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입국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여성들의 이동 비용은 목적국마다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 단기간 체류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후불로 지급 한다. 이러한 후불구조는 한국의 선불금과 비슷한 제도로 이 비용이 다 처리 될 때까지 여성들을 여권을 빼앗고 감금, 감시할 수 있는 인신매매적인 요소가 있다. 이미 2016년 태국정부와 현지 언론은 한국,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마사지 노동은 인신매매적인 요소가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 타이 마사지 업소의 실태;

여성들은 한국의 건전 마사지업소부터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제공하는 업소까지 여러 유형의 업소로 유입이 된다. 여성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인 생각은 여성들이 성매매가 있는 것을 알고 한국에 온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마사지 일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얼마의 돈을 내고 마사지까지 배우고 들어온다.

한국에 온 여성들은 본인 맞닥뜨린 현실에 충격을 받는다.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강요 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경찰,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다고 협박한다. 여성들의 대부분은 업주가 지불한 외부의 숙소에서 그룹으로 생활한다. 숙소를 외부에 두는 것은 만약 단속이 있을 때 업소에 있는 마사지사만 단속 되고 나머진 외부 숙소에 여성들은 단속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12시간 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하는 시간임에도 손님이 오게 되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신매매 피해 사례;

태국여성들은 한국으로 유입과정에서 여러 브로커의 인계로 인해 거짓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노동 환경이나 급여정보가 한국에 와서 다른 정보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태국 브로커만 믿고 건전 마사지업소에서 일할거라 믿은 여성들은 한국 브로커에 의해 성매매 업소에 넘겨져 믿었던 브로커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외면당한 사례가 있다.

14) 타이마사지업소 내 태국이주여성 노동실태와 이동경로에 관한 기초조사-동천 공익·인권단체연구사업(2017.02) 참고

한국에 입국한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한국 브로커들, 업주들은 여성들의 여권압류, 감금, 협박 등을 한다. 여성들은 인권침해를 받았음에도 정보부족, 의사소통의 문제, 경찰에 대한 두려움, 귀국 시 신변의 안전등으로 본인의 피해를 쉽게 노출 하지 못한다.

여성들은 한국에 도착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성폭력을 당한다. 그리고 성매매업 소로 넘겨지고 업주들은 업소에서 여성들의 탈출 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명문의 성폭력이 자행한다.

지원의 어려움;

여성들은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한계와 언어적인 한계로 본인들의 피해를 신고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업소와 한편일거라는 의심으로 경찰서가 가까이 있음에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업주, 브로커들은 여성들에게 노동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님에도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이미 불법을 저질렀다며 신고를 하면 본인들이 감옥에 간다는 협박을 함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더욱 신고의 의지를 꺾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신고 사례가 많지 않아 지원의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인성착취인신피해자에 대한 정책의 부재로 여성들의 피해 사실은 조사하지 않은 채 비자 외 활동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퇴거하며 사건을 종료한다. 여성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여 피해자임을 드러내면 그나마 사건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여성들이 가진 정보의 부재, 심리적 위축 등으로 신고를 못하고 단속에 의해 드러날 뿐이다.

여성들의 피해를 입증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러나 훈련된 통역인의 부재로 조사의 난항을 겪는 사례가 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잘못된 통역으로 진술의 번복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고 통역인의 역할을 넘어 여성들에게 취조하는 듯한 태도로 통역을 하여 여성들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례도 있다.

태국여성들 외 러시아 중남미여성들도 사증면제로 한국에 성착취 인신매매 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많은 사례가 지금까지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피스텔, 휴게텔 등 브로커의 기망으로 한국 성산업성에 유입된 사례가 있다. 안타깝게도 여성들은 성착취인신매매의 피해를 받고도 정책의 부재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간다. 겉으로 사례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추측이 된다. 여성들의 피해사실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여성들의 법률적인, 의료적인, 심리적인 부분을 보호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4. 한국의 미흡한 정책

E-6비자 소자자의 경우 기획사와 클럽 업주들은 여성들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고 비자 자

격 외의 일인 성매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이익으로 수혜를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E-6 비자 소지자들의 미등록체류(소위 불법체류) 비율이 높다. 못 견디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여성부가 주최가 되어 법무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각 부처 함께 외국인전용클럽에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지하고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업주는 클럽을 미리 정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대담 할 내용을 미리 연습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문제를 드러낼 수 없고, 성매매가 있는 문제가 있는 클럽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는 클럽으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비자를 허가만 했을 뿐 여성들이 한국 땅에서 어떤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 지 알고도 적극적인 대체를 위한 정책을 쓰지 않아 많은 피해 당사자를 양산한다.

태국의 여성의 경우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태국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이들이 받은 고통스러운 피해에 대해 조사하지 않으며, 가해자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채 문제로 보이는 여성들만 강제 출국 시키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보니 계속 태국여성의 피해자들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못하고 눈에 보이는 여성들만 사라지면 된다는 식의 태도로 보인다. 한국에는 몇 년 전부터 태국마사지업소가 유행하게 되었고 태국여성의 한국 입국율도 높아졌다. 그리고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당한 태국여성들의 비율¹⁵⁾도 높다. 많은 수의 태국여성이 사증면제로 들어온다. 점점 마사지 업소의 성착취 피해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저 단속으로 여성들만 강제 출국시키는 정책은 이 성 산업에서 여성들이 받았을 끔찍한 성착취 피해에 대한 대한 감수성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5. 민간단체 지원의 한계

두레방은 외 여성인권지원센터들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이주여성이 필요로 하는 법률적인 소송과 의료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겪은 인권침해를 인신매매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드러나기 어려워 실제 지원 단체에서 알기도 전에 바로 출국되는 경우가 있어 여러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이미 돌아간 본국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6. 정책을 위한 제언

15) 본 단체에서 외국인보호시설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와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 출국된 태국 내담자의 진술

무자비한 단속으로 한국의 성착취 문제를 가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관련 상담소에 연계하여 사건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 여성들이 권리구제 절차 종료 시까지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피해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수사에 참여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기관(수사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제적으로 피해 여성들을 만나는 담당자들의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피해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가감 없이 진술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팔레르모 의정서상의 인신매매 정의를 충실히 구현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신매매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

7. 맺음 말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성 산업에 이주여성들이 피해를 본 지 20년이 지나갔다. 각 정부들이 아주 더디게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이주노동을 고민하는 많은 이주여성들의 삶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택한 여성들에게 모든 상황을 여성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국의 성 산업에 유입시켜 실제 피해를 양산하는 브로커와 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하는 정책과 이주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는

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 계절노동자제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우다야 라이

한국에 이주노동자 숫자는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로 한국에 와서 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데리고 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고용허가제(특례고용허가제 포함)입니다. 또 2015년부터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노동자제도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일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짧은 기간에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강제노동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역시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고 고용주에게만 권한을 주는 실질적인 강제노동 제도입니다. 이 강제 노동 견디지 못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1. 고용허가제 미등록 노동자 규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현재 전체 체류이주민은 2,379,805명입니다. 그 가운데 미등록체류자는 356,095명이고 미등록체류자 가운데 3개월 이상 등록이주민의 숫자는 90,278명, 3개월미만 단기이주민의 숫자는 264,707명입니다. 3개월이상 미등록체류 이주민 가운데 고용허가제 E-9 비자가 가장 많습니다. 2018년에 발생한 등록이주민 미등록체류자 28,108명 가운데 E-9은 9,494명이었습니다. 취업비자 이주민으로만 보면 2018년에 발생한 미등록체류자 12,946명가운데 E-9은 9,494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등록이주민(3개월이상 체류) 중 신규 발생 미등록체류자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년 누계	'17년 동기
총계	2,084	1,477	2,664	2,773	2,315	2,661	2,585	1,984	2,775	3,236	1,734	1,820	28,108	26,178
E-9	666	604	1,058	1,140	891	1,006	824	681	748	583	780	513	9,494	9,455
G-1	339	294	351	290	285	232	262	271	282	331	257	255	3,449	4,608
D-4	490	140	702	646	151	724	771	353	1,205	1,067	188	575	7,012	3,426
F-6	92	84	101	101	109	88	103	87	95	119	98	84	1,161	1,334
F-1	116	103	135	143	158	158	155	139	106	143	110	81	1,547	1,447
E-7	126	43	59	82	79	50	55	53	48	52	60	48	755	975
H-2	72	71	80	154	106	110	108	127	103	110	58	90	1,189	1,267
E-6	9	7	18	12	16	16	11	12	12	15	7	4	139	449
E-10	81	54	49	77	191	206	185	156	68	59	91	63	1,280	1,355
D-2	15	22	15	11	173	24	42	22	26	551	10	29	940	520
기타	78	55	96	117	156	47	69	83	82	206	75	78	1,142	1,342

(출처: 2018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고용허가제 전체적으로 인원은 2019년 3월말 현재 274,152명이고 미등록 체류 비율은 대략 16%입니다. 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으로서 69,100개소이고, 전체 사업장 중 86%인 59,431개소가 30명 이하 사업장입니다.(경기연구원,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실태와 향후 정책, 2018.11)

고용허가제 업종별로 보면 어업, 건설업, 농어업 등이 미등록 체류율이 높는데, 이는 그만큼 이 업종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인권상황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고용허가제 업종별 미등록체류 비율>(2016년 말)

구분	업종별 체류자수	업종별 비율	업종별 미등록체류자수	업종별 미등록체류율
총계	274,168	100.0%	45,567	16.6%
제조업(E-9-1)	215,561	78.6%	24,058	11.2%
건설업(E-9-2)	12,474	4.5%	3,006	24.1%
농업(E-9-3)	27,984	10.2%	6,117	21.9%
어업(E-9-4)	9,920	3.6%	4,181	42.1%

(출처: 이한숙 외,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2017)

2. 고용허가제 하에서 미등록이 양산되는 이유

1) 사업장 변경 제한

고용허가제에는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업장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월급 적게 줘도, 일 힘들어도, 폭행 폭언을 해도,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해도 참고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라면 누구나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 하고 싶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사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장 이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을 이탈하면 미등록이 됩니다.

2) 사업주에게만 주어진 재고용 권한

그리고 고용허가제에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3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보다 더 일 하고 싶으면 사업주가 1년 10개월 연장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연장 해주지 않는 사용자도 많이 있습니다. 기간 연장 해주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한국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4년 10개월 이상 한국에서 일 하기 위해서는 성실근로자로 오든가 또 다시 시험 봐서 오든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지 못하는 조건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 하고 싶으면 미등록 상태에서 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구직등록 기간, 구직기간 제한

이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모든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면 고용허가제에는 사업장 변경하는 이주노동자의 구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 이후 1달 이내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하고 구직등록 한 이후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미등록이 됩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동 신고하고 이주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1달 이내 구직등록을 하지 못해서 미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사업장 구하지 못해서 미등록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고용센터는 구직자에게 알선장 지급하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이주노동자 정보를 줍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삼일마다 문자 하나만 보내 줍니다.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미등록체류 발생 (2010-201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초과	1,354	4,447	7,728	5,241	3,812	3,884
구직기간(3개월) 초과	1,727	3,593	3,839	2,737	2,817	1,817

(출처: IOM이민정책연구원, 불법체류 관리방안으로서의 합법화와 귀환지원, 2018.1)

4) 이주노동자 모르게 사업주의 일방적인 고용변동 신고, 이탈신고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주노동자가 휴가간 사이에 사업주가 고용변동 신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휴가를 다녀와서야 자기가 고용변동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경우 1달 안에 이주노동자가 구직등록 안 하면 미등록 됩니다. 이주노동자 본국에 가있는 상태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구직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이주노동자 이탈신고를 해버리면 노동자는 자기가 이탈신고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되고 비자를 잃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늦은 근무처 변경신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해서 새 공장에 가면 다시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개 사업주가 이 신고를 하는데 사업주가 늦게 하는 바람에 이주노동자 미등록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나이 제한

고용허가제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40살 넘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40살 이상 나이가 되는 노동자들이 일 하고 싶으면 미등록 상태에서 일해야 합니다.

7) 업종변경 제한

고용허가제에는 업종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갈 수 있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제조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업종 변경하고 싶으면 미등록 되어야 합니다.

8) 짧은 노동기간

이주노동자가 4년 10개월 이후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넘어서 일 하고 싶으면 미등록 됩니다.

9)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허락 해주면 또 사업주가 해고하면 3년 안에 3번 사업장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3번 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마음이 들지 않으면 3번 사업장 변경하는 노동자도 해고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고당한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더 이상 다른 공장 구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 낮은 임금, 임금 삭감, 체불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숙식으로 많이 공제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더 벌기 위해 미등록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임금 문제로도 미등록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계절노동자 미등록 문제

법무부가 만든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업에서 3개월 미만 단기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제도로서 2015년에 시범사업, 2017년부터 본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인력을 도입하거나, 지자체 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해서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도입 인원이 적었지만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상반기에는 전국 42개 지자체(1,296개 농가와 7개 영농법인)로부터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41개 지자체에 대해 2,597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3개월 단기근로자보다 말이 잘 안통하고 통역이 별로 없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크고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서히 미등록체류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절노동자 이탈 현황>

	총 외국인계절근로자 수	이탈자 수
2015	19명	0명 (0%)
2016	200명	4명 (2.0%)
2017	1,086명	18명 (1.7%)
2018.9	2,173명	98명 (4.5%)
합계	3,478명	120명 (3.5%)

(출처: 한국이민학회,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 2018)

계절노동자제도는 인권보호에 극히 취약합니다. 3개월 이하로 단기간 노동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어를 배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통역이 잘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고충이 있더라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 노동권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보험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출국할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노동조건 관련하여 제기한다 해도 3개월 지나면 돌아가야 하는데 문제해결이 되기 거의 어렵습니다.

근로감독도 어렵습니다. 법무부와 지자체 관할이므로 이들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노동부는 어느 농가에서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등록 체류 방지를 위해 과도한 통제가 가해집니다. 법무부와 해당 지자체의 최대 주안점은 미등록 체류 방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휴일에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한다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몰아서 주는 등의 불법적 통제를 할 수도 있고 연대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절노동자 규모가 커질수록 미등록 체류자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4. 단속추방이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 개선부터

미등록 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만 떠넘겨서 폭력적으로 강제 단속추방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을 회피하고 이주노동자의 피해만 강요하는 것입니다. 미등록 체류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야 합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주노동자가 인간다운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등록 체류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다른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제근로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꿔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쟁취하고 강제 단속추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정토론

단속과 추방을 넘어서는 접근과 대안

이탁건(재단법인 동천)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정동재(한국행정연구원)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단속과 추방을 넘어서는 접근과 대안

재단법인 동천 | 이탁건

단속과 추방을 넘어서는 접근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 임선영

단속과 추방을 넘어서는 접근과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 정동재

단속과 추방을 넘어서는 접근과 대안

이주와인권연구소 | 김사강



전체 토론
